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5일(금)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은정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78
3. 서류제출요구의 건	78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79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 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온 검찰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까지 의결하고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예.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7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청문회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의 있으십니까?

○**나경원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표결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시09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과 27일 그리고 9월 5일의 의결로써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 증인 10인과 참고인 13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5인과 참고인 1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5인 중 2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3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됩니다.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입니다.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입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입니다.
양승봉 변호사입니다.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입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희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동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희동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5일

증인 이희동

증인 김정민

증인 남경민

증인 박건욱

증인 조경식

○소위원장 김용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경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검찰 해체 입법청문회에 증인·참고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23명의 증인·참고인이 소환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법사위에 늦게 보임이 돼서 이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2명을 신청했는데 그 2명조차도 다 안 받아 주고 1명을 받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2명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당의 이 2명 중의 1명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이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보면 한마디로 수사 중인 사건 내지 감찰 중인 사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청문회를 빙자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수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청문회가 됩니까?

보십시오. 증인 관련돼서 관봉권 떠지 사건의 증인·참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또 대북송금 사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 대북송금 사건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아닙니까? 결국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것 아닙니까?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도 지금 현재 감찰 중인 사건 아닙니까? 또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이것도 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찰 해체 입법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죽 불러서…… 그러면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이 증인·참고인들을 제외시켜 주시고 나머지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증인·참고인 제외시켜 주실 것을 첫 번째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방송·언론에 공개하는 여부, 언론의 취재를 허가하는 여부, 중계를 허가하는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인데요. 결국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계 허가도 불허해 주실 것,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민주당은 부르지만 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릅니다. 검찰 해체를 위해 입법청문회를 빙자한,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증인·참고인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의사진행……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오늘 입법청문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지금 나경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께 요청드리는, 의견을 내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위원님 말씀은 이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된 증인·참고인에 대해 1소위 입법청문회에서 어떤 근거로 이 증인·참고인을 철회하라는 건지, 취소하라는 건지 전혀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을 지금 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끝난 사안, 그러니까 표결로 이미 다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 제 자리에서 안 보이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중간으로 자리를 좀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광철 변호사, 조성은 참고인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안 보여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간의 저 자리로 좀 옮겨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옮기는 것은 괜찮은데요 어차피 마이크가 뒤에 없어서 발언을 하실 때는,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오시기가 지금 자리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옮겼다가 나오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은정 위원** 지금 이 뒤에 화면에 보이는……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그러면 저기 허재현 기자님 옆자리 정도가 잘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박은정 위원**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옮기시고……

○**박은정 위원** 지금 이광철·정재기·조성은, 이 세 분만 좀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앞의 마이크가 있는 자리에 앉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질의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의자를 조금 더 배치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한 자리 정도 지금 더……

○**박은정 위원** 저 끝에 한 자리 더 있고요.

○**서영교 위원** 두 자리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어떤 참고인을 앞으로 오시게 할지……

○**이성윤 위원** 질문하는 위원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나와서 앉을 수 있도록……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실까요?

○**박은정 위원** 예, 나와서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힘 측에서 2명 신청했는데 참고인 1명만 인정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박형수 간사에게 충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취지도 설명드렸고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두 분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을 저희가 의결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는데 많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나오셔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돼서 나와서 아마 사건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민주당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의견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만 불이익을 당한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사 중, 감찰 중 혹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아직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사고 치고 도망가고, 사고 치고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사고 치고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사고 치고 감찰하는 것, 제대로 지금 감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진행 중인 사건. 확정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만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배숙 위원 다 하세요, 다.

○나경원 위원 관여할 목적이지요, 이게. 이게 관여할 목적이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관여할 목적인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전성배 사건이라고 하는 게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이것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나경원 위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나경원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곽규택 위원 무슨 도망을 와요! 위원장 사과하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 사고 치고 도망을 가? 막말 좀 그만해요. 민주당, 막말 좀 그만해요, 막말 좀.

○조배숙 위원 그 말 사과하세요. 사고 치고 도망 왔다는 그 말 사과하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진술 중에는 의사진행에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허가받고 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 왜요?
- 서영교 위원 소위원회인데 이제 진행하시지요, 순서대로.
-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사고 치고 도망을 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 곽규택 위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수사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무슨 목적이에요, 이게?
- 소위원장 김용민 또 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 나경원 위원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입니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러니까.
-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의회 독재인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위원님들, 이것은 의회 독재예요, 의회 독재.
- 박은정 위원 넘는 일인지 아닌지는 회의 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제가 지금은 소위원회라 가능한 마이크를 끄지 않고 있는 테.....

행정실, 마이크 다 꺼 주세요, 위원장 마이크 놔두고.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러니까.
- 박은정 위원 회의 방해하러 오셨어요?
- 나경원 위원 민주당 의회 독재입니다, 이것이.
-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 끄세요.
- 박은정 위원 회의를 방해하러 오셨냐고.
- 나경원 위원 아니, 사고 치고 도망을 가다니..... 민주당 의회 독재입니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것이고 사고 치고 도망온 나경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사과하세요!
- 소위원장 김용민 자, 그리고.....
- 곽규택 위원 김용민 위원장, 사과하세요!
- 소위원장 김용민 경고합니다.
- 곽규택 위원 뭘 경고를 해! 사과하세요, 얼른.
-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진행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 소위원장 김용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 중이에요.
- 곽규택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 소위원장 김용민 기다리십시오. 답변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 증인들 제외시켜 달라, 그러면 동의하겠다? 지금 위원님 혼자 이 소위 청문회를 진행하십니까? 우리 소위에서 이미 의결했는데 누구를 빼면 동의하겠다라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표결한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표결을 빙자한 강행이지요. 이게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중계 허가 불허 요구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중계를 해 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또 중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경원 위원 합법을 가장한 의회 독재, 이게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박은정 위원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지요.

○나경원 위원 검찰 출신들 대답해 보세요, 검찰에서 감찰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 이렇게 중인 불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소위원장 김용민 오늘은 전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안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안 줘요?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의회 독재고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의사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김용민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또 나가시고……

내란당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할 게 아닙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툭하면 우리에게 독재니 뭐니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란당 독재를 저지르고 했던 분들이 누구에게 독재를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말입니다. 일단 표적을 정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식 검찰 수사는 이렇게 피의자를 몰아가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극단적인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무죄 증거가 있어도 이를 돌아보지 않고 기소합니다. 무죄가 나든 말든 기소하고 봅니다. 피고인은 열심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심문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윤석열 말을 그대로 빌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딴난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정권 수사로 키운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문제인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백원우, 황운하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저를 배제하고 당시 차장검사에게 직접 지시해서 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말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는 위법 수사입니다.

이런 위법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전원 무죄 확정됐습니다. 무죄 확정된 이 피고인들의 인생, 비용, 시간, 검찰은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검사들이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떠들고 12·3 내란 계엄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국민들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사건으로 그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보겠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고인 이광철**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생긴, 악용한 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관련된 윤석열 당시, 제가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패거리’라는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휘하의 울산 사건을 진행했던 분들은 도저히 검찰청법에서 명언하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서 제가 그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표적했다는 점은 당시에 사건이 서울로 올라왔던,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때 당시 2019년 8월 달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저도 청와대에서 직접 들었지만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수사 결과 조국 사모펀드설은 전혀 진실이 아님이 판명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그 수사의 핵심적인 조국 사모펀드설이 전혀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결과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울산에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이 사건의 중간에 보고서가 내려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혹은 상징적인 인사들이라거나 검찰개혁의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조국 수사 사모펀드설을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한 양감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뒤엎는 수사를 기획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황운하 경찰청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참고인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대 1기생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후에 일관되고 줄기차게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경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했던 수사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였습니다. 당시에 울산지검은 이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매우 예민하고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황운하 청장의 모든 범죄 비위 사실을 불기소 결정문에 남기는 등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기 이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검찰개혁을 완성하라 하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양감음의 목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건 수사 당시에 2000년대 들어서 2019년 이 무렵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이 약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당시 울산시장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던 피의자, 그것도 청와대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참고인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분이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돌아가신 고인은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할

때 검찰파견관으로 일했고, 제가 듣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내 수사관 중에서 에이스라고 평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을 와서 굉장히 역량과 또 두루두루 원만한 인품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여 가지고 집권 2년 차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 혼란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당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기획해 가지고 집권 2년 차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위, 두 번째는 각 부처 간의 알력, 헤게모니 다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저희가 2년 차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었고 그중 하나의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경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나온 고인과 또 한 분의 파견관을 울산에 보냈던 것인데 검찰은 바로 이 지점을 들어 가지고, 2018년 1월 11일경에 울산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 측근들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점검하러 왔다라고 단정 짓고 2019년 11월 22일 날 고인을 울산지검으로 소환해서 이 부분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받고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검찰 특수부의 비열한 수사 기법에 굉장히 번민을 했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6일 날 윤석열 패거리들이 울산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켜 가지고 처음으로 불렀던 분이 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분은 검찰 특수수사의 비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 주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버틸 것이냐, 원하는 답을 해 줄 것이냐. 고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삼의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이 안고 가겠다.

저는 그래서 고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검찰 특수수사의 비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울산에 내려갔던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을 점검하러 갔다, 백원우가 시켰다, 조국도 알고 있다, 이광철이 실제적인 것은 다 지시하고 점검했다라고 했더라면 정말로 그때 문제인 정부가 무너질 만한 큰 충격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인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냥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런 선택지 앞에서 고인은 고인 스스로 안고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윤석열 패거리를 비롯한 검찰 특수수사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검찰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고인이 돌아가신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검찰 수사의 무도함, 무도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검사 패거리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고인이 검찰의 압박 수사 그리고 끊임없는 가족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윤석열식 수사 방법의 희생자라는 그 말씀인가요?

○참고인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2019년 12월

1일 날 저녁 때 일요일이었는데 저희가 고인이 서초동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고, 경찰을 통해서 상황 보고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을 새워서 고인이 울산에 내려갔던 2019년 11월 22일부터 그 이후의 동선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인이 11월 22일 날 조사를 받고 올라오셔 가지고 고인의 친한 후배하고 말씀 나눈 것을 들어 보니 ‘자기 몰래 별건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지 검찰청에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그런 것이 없어서 안심했다’ 이 대화가 11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올라온 날이었고 27일 날 고인에 대한 소환이 있었고요. 그 뒤로 고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12월 1일 날 사체로 서초동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고인은 첫 번째 조사 이후에 두 번째 중앙지검의 소환조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무래도 고인이 검찰 직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기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백하라는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울산시장선거 사건,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 가능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철** 짤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울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중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으로 삼으면 그 표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대대적으로·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결국은 검찰권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광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모두 저와 관련돼 있고 이광철 변호사도 이걸로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 인생을 결딴내 놓고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란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광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패거리가 지금 검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패거리가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도개선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과제,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국민들께 이 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참고인 이광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증인과 참고인분들의 자리를 질의하시기 좋게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그러면 자리 정돈이 됐으므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위원님 질의 순서였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들어오지 않으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질의 순서를 넘어가서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창민 변호사님, 진술 좀 듣고 싶은데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박균택 위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 이효상 기자의 사건 변론을, 변호를 맡아 주셨던 거지요?

○**참고인 이창민** 예, 그리고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많으십니다.

○**참고인 이창민** 고맙습니다.

○**박균택 위원** 경향신문에서 국힘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과 관련된 PF 대출을 실행해 줬던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을 중수부의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2년이 지나서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그리고 또 그 기사를 받아서 썼던 타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무차별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는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이효상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소환조사를 받았던가요?

○**참고인 이창민** 예, 소환조사 세 번, 포렌식 참여 여섯 번 그리고 압수수색 한 번.

○**박균택 위원** 지나치게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그때 검찰에게는 직접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지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창민** 저도 위원님 질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언론탄압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절차상·내용상 모두 위법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지점은 절차상으로도……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개시·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요.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경제범죄·부패범죄 및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관련성에 끼워 넣기 위해서, 비공개 대검 예규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 만들었고 그 비공개 대검 예규에 보면 직접 관련성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놓고 임의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사건이고요.

내용상으로도 아시다시피 공인의 공적 영역, 당시 대선후보에 관해서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는 당연히 언론에서 해야 되고 언론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십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탄압을 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복 수사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 언론사 등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계속 1년 9개월간 수사를 했고요. 그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 5월 28일경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났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 6월 3일에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언론탄압으로 보이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판례에 의하든 학설에 의하든 대통령후보까지 갈 것도 없이 공직에 있는,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의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의혹이 완벽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 판례의 당연한 태도인데, 이 사안도 그 기준에 비춰 보면 무혐의 사안이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선진국을 말씀하셔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 사문화하는 경우나 명예훼손죄가 아예 형사법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영역으로만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서 대선후보를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한 검증 차원의 언론보도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법리는 공인의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생활이 아닌 공적 영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는 상당히 현저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인데요. 검찰은 이런 법리를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수사 그리고 언론탄압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명예훼손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한 적을 본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제일 큰 검사 구성 단체인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의 검사를 구성해서, 수십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한 적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처리가 된, 불기소처분을 나중에 해 준 시점을 보면 금년 5월 말이었을 겁니다.

○참고인 이창민 예, 5월 28일입니다.

○박균택 위원 결국 대선에서 국힘 정권의 낙선, 국힘 후보의 낙선이 거의 명백화되는 그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과오를 벗어나려고 그 시점에 맞춰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처리 시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처리 시기가 이번 해, 2025년 5월 28일이고 사실상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직전에 불기소처분 한 것을 보면 언론탄압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검사들이 압수수색으로 수사개시를 했는데요, 이게 압수수색할 사안이건 아니건 간에 압수수색 표지에는 ‘배임수재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2페이지 이하에는 명예훼손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필요성란에도 여론조작을 해서 대선 개입을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언론인들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었거든요. 즉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꼼수를 부려 가지고 앞의 압수수색영장 1면 표지에는 배임수재, 즉 경제 및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또는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서 첫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던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수사를 벌였던 그 검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아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응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았고 훌륭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 가지 조금 몹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는 줄 알면서, 수사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9개월간 피의자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혔던 검사들, 중앙지검장, 차장·부장 검사들,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중과실, 고의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예, 그렇게……

○박균택 위원 그러면 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란 말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셨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추후에 꾀고 추가를 통해서 손해배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한 하지만 더 드리면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 사안이고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고소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아무튼 당시 수사 관계자들, 책임자들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역사적으로 이런 과오의 재발을 막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다음 질문은 좀 시간이 짧아서, 다른 분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소위원장 김용민** 하셔도 됩니다.

○**박균택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하시다가 나중에 더 이어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허재현 기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허재현** 허재현입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기소된 사안 진행 경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허재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끝내 지난 6월 경에 기소를 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과 함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애초에 주장했던 공소장에 담겨 있던 내용들도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수사 자체가 증거도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그런 기소를 했다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검찰은 재판부에 이것은 명예훼손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장동 부패 수사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고 판사에게 기소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안이었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인 허재현** 일단 판사의 설명은 검찰의 소명 그리고 증거,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 가겠다고 설명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판사가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서도 내고 하면서 이게 대장동 부패 수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기소된 피의자들이 누구도 그 대장동 부패 일당들과 뭔가 연락을 시도했거나 그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시한 그런 측면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될 수 없다, 대장동 부패 수사 와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계속 판사에게 소명을 하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참고인과 그리고 민주당이 서로 공모를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혐의 내용을 그렇게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참고인 허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쉽게 말하면 혐의 내용을 근거도 없이 뻥튀기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 아무리 수사해도 민주당과의 연락 관계 이런 것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소 이후에는 공모 관계에 관한, 민주당과 함께 공모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은 삭제를 한 상태 아닙니까?

○**참고인 허재현**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때 민주당과 참고인의, 허 기자님의 연관 관계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별였던 것이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였던 거지요?

○**참고인 허재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도 그 통신내역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 보고 놀랐는데, 허 기자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 그런 보도와는 상관도 없었고 또 더구나 그 보도가 된 시점과는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통신내역을 조회했던 것을 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나 건져 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를 했고 상관없는 것까지 수사를 벌이는 식의 투망식 수사를 벌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참고인 허재현** 여러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저는 지금까지 추정을 해 왔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가능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 말씀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어서……

○**참고인 허재현** 제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분명히 민주당의 김 모 의원 그리고 보좌관들과 조작보도를 모의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고 문자, 녹취록 등으로 확인이 되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검찰의 영장에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조선일보 등에 검찰은 빠르게 유출을 시켰고 윤석열 명예훼손을 마치 특정 기자들이 민주당과 유착해서 조작보도를 모의한 것처럼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러나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도 1년 9개월가량 검찰이 저희들을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단 1건도, 민주당의 보좌관들이나 의원들과 제가 조작보도를 모의한 정황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압수수색영장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라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끝내 판사는 검찰에게 도대체 허재현 기자가 민주당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모의했다라는 건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결국 검찰은 설명해 내지 못했고 끝내는 재판을 앞두고 모의 관계는 철회한다고 의견서에 밝히고 공소장을 새로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작수사임을 처음부터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판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나 끝내 기소했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혼동되실 수 있으신데요. 아마 각 위원님들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진행하시는 사건마다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리를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박건욱 검사하고 김광민 변호사, 두 분 자리를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명패도 바꿔 주십시오.

명패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김광민 변호사님은 명패가 없으시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 명패를 치워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분은 자리 안 옮기셔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김정민 증인과 허재현 기자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질의가 끝나면 증인과 참고인들은 자리를 다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오늘 건진 은둔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돈다발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증거물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물이 훼손됐는데 기본 ABC 이 증거물 훼손한 사람들이 증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고 수사관들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박건욱 검사, 이희동 검사 그리고 남경민 증인 그리고 김정민 증인 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박건욱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당시 남부지검 부장검사. 박건욱 부장검사,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두 번째,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관봉 떠지 유실 관련 남경민 증인 그리고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김정민 증인, 이렇게 네 사람은 관봉권 관련해 제가 질의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할 내용은 대북송금 관련해서,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엮어서 간첩죄로 만들려고 했던 이 어마무시한 검찰들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님,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허재현 기자님, 참고인으로 요청드렸고.

쌍방울 회사 그리고 쌍방울 말고 KH 배상윤 진술 관련해서 과연 검찰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과 또 검찰 수사 과정과 조사 과정 그리고 수원구치소에서 어떤 불법이 횡행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경식 증인이 나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조경식 증인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상황의 증인입니다. 수원구치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검찰, 특검,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경식 증인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떠지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희동 차장검사, 묻습니다. 건진을 수사했지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같이 일했었지요? 그전에 윤석열과 같이 일했었지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 서영교 위원** 윤석열 검사와 같이 일을 많이 했지요?
- 증인 이희동**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서영교 위원** 윤석열 검사와 같이 일한 지 오래됐지요?
- 증인 이희동**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 서영교 위원** 국정원 댓글 때부터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이희동** 아닙니다.
-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 증인 이희동**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부부장이었고요.
- 서영교 위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부부장이었어요, 그렇지요?
- 증인 이희동** 예.
- 서영교 위원**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요. 윤석열 산하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갔어요. 건진 사건을 수사했는데 건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몇 번 청구가 기각됐습니까?
- 증인 이희동** 두 번 청구해서 기각되었습니다.
-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법원이 기각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장청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 지금 건진은 구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증인 이희동** 되어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건진 집에 갔더니 돈다발이 나왔습니까, 은신처에서?
- 증인 이희동** 그렇습니다.
- 서영교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 증인 이희동** 1억 원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1억 6500.
- 증인 이희동** 예, 맞습니다.
- 서영교 위원** 적당히 얘기하지 마시고요.
-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왜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 증인 이희동** 건진법사 사건 관련하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 서영교 위원** 1억 6500. 그리고 우선 더 많은 돈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겁니다.
- 그런데 1억 6500 중에 관봉 쳐진 돈다발이 있었습니까?
- 증인 이희동** 그거는 압수……
- 서영교 위원** 사진 띄워 주세요. 사진 띄울 수 있습니까?
- (영상자료를 보면)
- 저거지요?
- 증인 이희동** 예.
- 서영교 위원** 저 압수물이 비닐에 싸여 있지요? 저 압수물이 얼마입니까, 관봉 쳐진 게? 5000만 원입니다. 비닐로 다 싸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거 다 잘 세웠고요 ‘5만 원짜리 5000만 원이에요’라고 비닐로 다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 증인 이희동**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100장씩 관봉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희동**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그 관봉 떠지가 다 분실되고 그 관봉 떠지가 고무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 있습니까?

건진을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건진은 구속도 못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것도 한참 후에나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증인 이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진법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는 못 받았지만 수사팀이 구속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희동** 전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김건희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이희동** 예.

○**서영교 위원** 이희동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부인이었던,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만난 적 없습니까?

○**증인 이희동**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건진 사건 수사하면서 윤석열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희동** 전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건진을 수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혀 없는 건 확실하지요?

○**증인 이희동**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위증하면 그 위증은 처벌이 따릅니다.

○**증인 이희동** 전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건진은 누구하고 연루되어 있어서 압수수색했습니까? 누구랑 연루되어 있습니까, 건진은?

○**증인 이희동** 최초에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범죄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희동**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저 스티커에 돈이 발부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언제로 되어 있어요?

○**증인 이희동**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언제 5월 13일이에요?

○**증인 이희동**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아까 수사는 2018년 거로 됐다 그랬지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압수수색한 저 돈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희동
.....

○서영교 위원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증인 이희동 2022년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2022년 5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부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증인 이희동 다음입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2018년 사건으로 압수수색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인데 어딜 나와서 2018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2018년 거 수사하다가 2022년 5월 13일 게 나왔는데 아차 놀라서 떠지랑 없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2018년 자치단체 공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진이 그걸로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전진과 윤석열이 대선캠프에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가 청탁되었는지, 전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가 무마되었는지 이것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하고 내놓은 게 2018년 걸로 내놓고. 저것은 2022년 5월 13일 날 돈이에요. 그런데 저 떠지를 다 분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 후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전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여러분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18년 거랍니다.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저 돈은 언제 돈입니까?

○증인 남경민 2022년 돈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증인 남경민 2022년 돈입니다.

○서영교 위원 2022년 5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 찍혀서 나왔으면 저 돈이 전진에 돌아올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도 한참이 지나서 전진에게 왔을 텐데 저것이 전진에게 무슨 인사를 청탁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김건희 등이 내려보낸 돈인지 알 길이 없는데 왜 저걸 해체했지요?

저거 얼마입니까? 저렇게 싸여 있으면 얼마입니까?

○증인 남경민 5000만 원입니다.

○서영교 위원 5000만 원으로 싸여 있는데 저걸 왜 해체합니까?

○증인 남경민 저는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체했습니까, 저것은?

○증인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수리 과정에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서영교 위원 김정민 수사관, 왜 해체했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정민 수사관.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수사한 사람이 밝혀내야 되는 거 아

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검에 가서도 저 관봉 띠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특검도 2018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 사건이라고 검찰이 특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게 2018년 거입니까? 저 스티커 없었으면 다 속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 속고 저 관봉은 며칠 전 정보위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돈을, 얼마입니까, 1억 6000만 원을 용산 김태효에게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 전 정보위에서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정보위원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부정과 부패,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이 나오는 겁니다. 저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저 돈은 얼마입니까?

○증인 김정민 5000만 원입니다.

○서영교 위원 5000만 원, 저건 한국은행이 5000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증인 김정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증하면 안 되는 것 알지요?

○증인 김정민 예.

○서영교 위원 저 1억 65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저렇게 붙어서 왔고 저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저게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사진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저 것을 2018년 사건이라고 퉁쳐 버리려고 했는데 저것은 2022년 5월 13일에 한국은행이 찍어 낸 돈이에요.

그리면 다른 사진, 내가 은행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한국은행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내가 기재위원 한 사람이에요. 한국은행과 직접 통화했고 조폐공사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돈이 나올 때는 비닐에 다 쳐서 비닐봉지에 다 싸여져서 스티커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다 싸여져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닐봉지에 다 싸여져서 와요. 오늘도 내가 하나은행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5000만 원은……

이희동 차장검사.

○증인 이희동 예.

○서영교 위원 수사 많이 했지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5000만 원으로 비닐에 싸서 와요, 아니면 다 날 것으로 와요? 날개로 와요?

○증인 이희동 보통 날개로 올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증 1, 위증 2.

자, 다시 김정민 수사관, 어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아까 사진으로 다시 돌려 보세요. 옆에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희동 검사, 옆에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이희동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닐로 전부 다 둘러쳐져서 나왔어요, 낱개로 왔어요?

○증인 이희동 앞에는 위원님 질문 취지를 오해했습니다. 저기에는 비닐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닐로 다 쳐져 있지요?

○증인 이희동 제가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당시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닐로 쳐져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지요?

○증인 이희동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중요한 것은 1억 6500만 원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중에 5000만 원 짜리는 비닐로 쳐서 온 거예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거를 해체한 사람이 김정민 수사관인가요?

○증인 김정민 해체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해체하고 그 떠지 말아…… 뒤로 넘겨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돈에는 100장마다 이렇게 떠지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나온 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장씩 다 모아서 5000만 원을 비닐에 딱 쳐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닐에 쳐서 갖다 놓은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건진 은둔처에서 나왔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그때 당시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떠지는 왜 떼서 없애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떠지, 어느 은행이고 어디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예쁜 떠지, 은행에서는 이걸 내보내 줄 때 우리 은행에서 누구에게 보냈어요라고 확인하기 위해 넣어 놓는 떠지, 이것을 왜 없앴어요?

김정민 수사관 혼자 없앨 수는 없어요. 알지요?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이걸 없앨까요? 무슨 재주로 이 증거물을 없앨까요?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저 비닐을 뜯습니까? 증거물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정민 수사관?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대로 보존해야지요?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아요.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뜯어서 하나하나 하고 떠지를 버리고 거기다 어떻게 고무줄로 묶겠어요? 다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돈도 내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 것은 실수도 있다고 쳐요. 그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세겠어요. 저건 그대로 둬야 돼요. 그렇지요?

금거북이가 왔어요. 이 금거북이가 제대로 됐나 해체해 봐요?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저것도 똑같아요. 김정민 수사관이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이거는 위에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것 다시 한번 돌려 봐 주세요.

뒤에 박건욱 당시 부장검사였지요?

○증인 박건욱 예.

○서영교 위원 지휘했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와 주시면……

○서영교 위원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가시고 김정민 수사관 들어가세요.

김정민 수사관,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무슨 재주로 수사관이 이 떠지를 없애고 그걸 해체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했습니까?

○증인 박건욱 저는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날 그 돈은 무슨 돈이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증인 박건욱 현금 1억 6500만 원을 숨은 주거지에서 발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할 때 무슨 사유로 저런 돈이 있었다고 청구했습니까?

○증인 박건욱 구속영장은 아까 차장도 말했지만 2018년 공천현금 사건으로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거예요, 2018년 거예요?

○증인 박건욱 2018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발행일자가, 정산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 5월 13일 거지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언제 됐어요?

○증인 박건욱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것은 13일에 한국은행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윤석열에게는 취임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건진이 인사 청탁을 받았든 굿당이든 뭐든 간에 그런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증인 박건욱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저희들이 압수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압수영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판사가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으셨지요?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것이니 이런저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묻어 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건진은 2018년에 두드러진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부터 나온 사람입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시간이 초과됐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사가 2018년 건데 2022년 5월 13일 거니까 묻는다,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잘한다고 모두 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답변할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검사…… 그런데 지금 보는 대한민국의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의 사건을, 건진의 사건을 묻고 누른다고 묻힐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저 돈을 낱낱이 해체해서 떠지를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면서 ‘2018년 거야’라고 묻고 수사관이 떠지를 그냥 버렸겠습니까? 저 차장검사 이희동, 저 부장검사 박건욱 그리고 함께 연결되

어 있는 남부지검장 신웅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심우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태호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윤석열 등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 오늘 날날이 국민들께 알리면서,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정말 현장에 있고 이 특수 검사들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만들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현장을 국민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증인 박건욱**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관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답변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듣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다른 분들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수사하던 증거물을 없애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나왔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아까 띠지 사진 그거 누가 찍으셨어요?

○**증인 김정민** 그거는 수사팀에서 압수하시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본인은 지금 이 압수물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증인 김정민** 저는 압수물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압수 현장에 간 분도 아닌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남경민 수사관은 어떻습니까?

○**증인 남경민**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수사와는 관계없이 압수물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접수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압수수색 현장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두 분 공통으로 언제 임용되셨어요, 수사관으로?

먼저 말씀하십시오.

○**증인 남경민** 저는 2019년에 임용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2019년에? 그러면 경력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6년?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계속 이 업무만 하셨나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업무도 하셨어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이 업무는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증인 남경민 24년 7월부터……

○소위원장 김용민 24년 7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김정민 수사관은 언제 임용되셨어요?

○증인 김정민 저는 2024년 3월에 임용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임용돼서 남부지검이 첫 근무지인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 김정민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이 지금 감찰받고 계신가요, 대검의?

○증인 남경민 감찰은 끝나고 수사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사를 받고 계세요, 두 분 다? 답을 하십시오.

○증인 김정민 예, 압수수색 당하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증인 김정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까 두 분 답변에서도 떠지를 누가 해체했는지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증인 남경민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는데 관봉을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떠세요, 김정민 수사관은?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면, 혹시 김정민 수사관?

○증인 김정민 저도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봐 봐요. 지금 두 분만 수사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관련된 두 분 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하는데 왜 두 분만 수사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분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김정민 수사관, 이전에도 이렇게 관봉권 떠지 보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저희는 검사실에서 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냐고요. 이게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 보관한 거예요?

○증인 김정민 떠지 보관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증인 김정민 예전에 다른 선배님께서 검사실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도 이렇게 떠지 다 떼 버렸나요?

○증인 김정민 그때는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손 드셨잖아요, 남경민 수사관?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뺐는지도 모르고, 이거 왜 두 분이 다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누가 빼라고 하면 빼지, 빼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뺐을 것이고요. 그 지시가 없었어도 뭘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비닐 해체 마찬가지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것 맞아요?

○증인 남경민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정민 조사관은 본 적은 있지요, 담당자였으니까?

○증인 김정민 매일마다, 다른 압수물을 맨날 봐서 그 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압수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압수물이 어디서 어떻게 보관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으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관하는지.

○증인 김정민 일반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관봉권.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이것. 이 관봉권을 얘기하세요.

○서영교 위원 비닐이 다 쳐져 있고 5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관봉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증인 김정민 ‘관봉권’이라는 말을 4월 이후에 처음 들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증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돈, 관봉권이든 어떻게 인식을 했든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인 김정민 저희 압수물 보관하시는 선배님께 인계해서 그게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금고는 어디 있나요?

○증인 김정민 지하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금고는 증인도, 수사관도 가세요?

○증인 김정민 저는 잘 가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 선배에게 압수물을 넘겨줬을 때 그때는 관봉권 띠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넘겼나요?

○증인 김정민 기억이……

○서영교 위원 답을 하세요, 답을.

○소위원장 김용민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김기표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요.

○서영교 위원 본인이 만진 게 아닌 모양이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희동 증인, 사표 제출하셨지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찰 시작 전에 하셨나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찰 들어올 줄 알고 사표 제출하신 거예요?

○증인 이희동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왜 사표 제출하셨어요?

○증인 이희동 올해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해서 냅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감찰 중이고, 감찰 대상으로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지휘라인에 있었으니.

○증인 이희동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사건 감찰 끝날 때까지는 법상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건 맞지요?

○증인 이희동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걸 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증인 이희동 저는 사표를……

○소위원장 김용민 당당하게 감찰받고 필요하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잘못 있으면 처벌받고 변호사 개업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증인 이희동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증인 이희동 위원장님, 혹시 제가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답변 못 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지금 그 질의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김정민 수사관한테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압수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 압수물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해야 되는 것이?

○증인 김정민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김정민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으면 선배 직원한테 그걸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증인 김정민 예, 압수물을 확인하고 접수해서……

○김기표 위원 접수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실제 보관은 다른 분이 하고 있나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이 지금 왜 얘기가 되냐면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셨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증인 김정민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현금이 오면 보통 구권이기 때문에 돈을 세거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봉권은 완전히 새 돈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일련번호가 짹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세는 것도 사실 기계에 넣는 것보다 번호만 쭉 봐도 이게 100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셀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 관봉권 한 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것을 셰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셰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특이하게 관봉권 5000만 원, 500만 원짜리 10개가 비닐로 묶여 있고 그것을 떼면 또 띠지가 일반은행에서 구권을 발행할 때 그 띠지가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떼고 나면 일련번호가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끝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기억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돈을 셰다면.

○증인 김정민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김정민 수사관은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셨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뇌물 액수나 이런 걸 할 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압수물을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형상 그대로 접수해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언론보도상 돈을 세는 바람에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조금 의아했던 말이지요, 저는.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사관들이 가져와서 볼 때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 된다 할 때는 떼서 세 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증인 김정민 예, 세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얼마인지 다 기록을 하나요?

○증인 김정민 예, 매우 확인을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압수물을 뭔가 형상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봉권 띠를 빼고 하면…… 보통은 현장에서 압수를 할 때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무 동영상

도 안 남기고 돈을 셨나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말은 돈을 센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네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세니까?

○증인 김정민 예,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기는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돈은 셨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돈을 셰다면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 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무튼 현금은 100% 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게 관봉권 띠지째 있는 채로 왔는지 아니면 풀려서 왔는지 그 것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든 하겠네요.

○서영교 위원 위증을 각오해야 합니다.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근무 부서는 사건과인가요? 압수계?

○증인 김정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표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돈 접수했을 때.

○증인 김정민 예, 그때 당시에 압수계에서 일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압수계?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압수계에서 압수해 오면 그런 식으로 돈 확인하고 장부에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돈을 센 건 맞는데 관봉권이 있는 채로 왔는지 없는 채로 온 것을 셨는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수사·기소 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으로 믿고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님, 이쪽 앞으로 오시면……

○소위원장 김용민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저는 김해시장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변호사님은 김해시장의 변호인이었던가요?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 모인가요, 허 모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참고인 김진형 김……

○김기표 위원 김 모?

○참고인 김진형 예.

○김기표 위원 사퇴했던 그분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했었던 그분인가요? 그러니까 민주

당 소속……

○참고인 김진형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사건이 결국 뇌물로 돼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진형 아닙니다.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암이 발병하신 사실이 확인되어서 2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건 잘 모르고 물어봤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진술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김 모……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변호했었던 시장님께서는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의 지역자치단체장으로 재선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많은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건설업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건설업자가 수십억의 횡령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밤새 조사를 하다가 ‘니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그것을 이 지역 시장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고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건설업자가 밤샘 조사 이후에 한 새벽 두세 시경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니가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느냐,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느냐’, 그 금액이 60억가량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사실은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서 김해시장, 고인에 대한 뇌물을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건설업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시기나 장소, 금액이 계속 변경되면서……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용민 잠시만요.

○이성윤 위원 남경민 수사관 핸드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남경민 수사관,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누구하고 연락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연락 안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증인 남경민 뉴스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증인 남경민 뉴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의심되는 모습조차도 피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 외부와 소통하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크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증인, 지금 왜 아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 발언하시면 위원장 봐야 되지 않아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래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올려놔 보세요, 위에.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보좌진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용까지 확인 안 할 테니까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아니, 위원장 발언하는데 아래를 보고 계속 끔지락꼼지락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들, 주의드립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혹여라도 위증의 의심을 받는 행동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증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 가시겠습니다?

○참고인 김진형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진술을 통해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보름가량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대로 건설업자의 진술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지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와 인지수사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 수사보고서와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뇌물의 금액과 장소, 시기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장소나 시기,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열흘 이후에 작성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최초 수사 뇌물공여자가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과는 다르고 오히려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지요.

이 사실은 결국 뭐냐면 진술에 따라서 인지되고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들이 작성해 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뇌물공여자에게 ‘너는 이날 이렇게 이 금액을 줬다라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작된 사건의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 물론 재판을 하셨으면 관련 기록을 다 보셨을 테니까,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애초에 수십억 횡령 건으로 압수수색이 됐던가요?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건설업자를 추궁할 때, 수사할 때 횡령보다는 아예 시장한테 얼마를 줬느냐라고 주된 목적을 물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김진형 처음부터 그렇게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애초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새벽에 그 내용을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새벽 한 서너 시경에 인정을 한 뒤로 배임·횡령에 관한 수사는 중단되고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만 집중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횡령으로 압수수색이 됐고 실제로 범죄사실은 그것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사를 할수록 횡령 금액이 늘어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요. 그것이 일종의 압박이 됐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처음 당일 날, 물론 당연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피

의자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다른 과정을 통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을 텐데요, 첫날 조사를 하면서 확인되었던 횡령 금액은 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장님에 대한 뇌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었는데요. 당일 조사하면서 확인되었던 60억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 결국에는 8억 가량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 혐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60억 정도의 배임·횡령이라면 구속기소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8억으로 불구속기소가 되었다라는 점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협의를 덜어 내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한 60억 정도까지 횡령 액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줄어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그 정도면, 보통 10억 넘어가면 구속을 하니 마니 할 텐데 8억 정도로 줄여서 공소가 제기돼서 그것이 결국 시장에게 돈을 쳤다고 말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진술서에는 4000만 원으로 돈을 쳤다고,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다음 경위를 제가 보는 겁니다.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당일 날 동시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4000만 원, 5000만 원의 큰 차이를 아시지요, 변호사시니까?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특가법상 5000만 원부터가 징역 7년 이상이 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4000만 원이면 혹시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참고인 김진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고요. 금액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작성된 수사보고서라고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검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록을 봤을 때 그날 당일 날 진술서에 근거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수사보고서에 맞는 다른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가요?

○**참고인 김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사보고서 자체가 인지수사보고서였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혐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범죄사실에 관한 한 그것이 진술서 빼고 최초의 자료인데 그런데 진술서와도 최초에 작성된 자료가 전혀 다르고 그것을 보강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결국 그것이 공소사실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진형**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시면……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지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처음에 인지수사였지요, 변호사님?

○**참고인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검찰이 이른바 특별수사라고 해서 인지수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전 정권에서도 정적 죽이기에 동원됐던 것이 수사·기소를 같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추가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박건욱 부장님,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봉권 형태로 압수한 것은 기억나시지요?

○**증인 박건욱** 예.

○**장경태 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건욱** 나중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도 안 받으셨나요?

○**증인 박건욱** 그때 1억 6500만 원 현금 압수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관봉권 형태라고 당일 날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시고요?

○**증인 박건욱**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압수계에 접수한 시기는 기억나시나요?

○**증인 박건욱** 추후에 저희들이 4월 달에 경위를 확인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압수계에 전달하는, 접수하는 시기도 기억이 안 나시고요?

○**증인 박건욱** 그것은 그때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될까요?

○**장경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박건욱** 작년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인 18일 날 압수계에 압수물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받으셨고요?

○**증인 박건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해당 압수수색한 검사가 접수도 했나요, 그 팀이?

○**증인 박건욱** 그 검사실에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누구였지요? 최재현 검사지요?

○**증인 박건욱** 예.

○**장경태 위원** 최재현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접수를 했겠지요?

○**증인 박건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검사가 직접 접수하지는 않지요? 수사관이 했겠지요?

○**증인 박건욱** 수사관 통해서 합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접수받을 때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어요?

○**증인 김정민** 그날 말씀……

○**장경태 위원** 12월 중순에 대충 5000만 원 정도 되는 관봉권이 들어오면 ‘돈뭉치가 들어오는구나, 띠지와 스티커가 있구나’라는 기억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금액은

모르지요. 그런데 돈 끓음이…… 돈 끓음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봉권. 관봉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들어옵니까, 그게? 가끔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봉권이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증인 김정민 예,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관봉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증인 김정민 관봉권이라는 형태를 사진으로……

○장경태 위원 처음 보셨어요?

○증인 김정민 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관봉권 형태가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엄청나게 중요한…… 저 제보받은 것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증인 김정민 그런데 관봉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 달에 처음 알았고……

○장경태 위원 관봉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해당 검사 지금 징계받아야 되는 거네. 그런데 아무튼 관봉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정민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남경민 수사관은 같이 압수계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보통 압수 물품 들어올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어떤 요구 하지요?

○증인 남경민 저희가 현금에 대해서 원형보존할지 확인하면 그 여부를 지휘해 주십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최재현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보존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지시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했어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공문 형태로 있지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공문 형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받았는데요? 최재현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보존 지시를 문서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위증 책임지세요.

그러면 지시받은 공문에 대해서 본인들은 해당 접수계의 인원으로서 확인 매번 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압수물품에 대해서 점검하지요, 법령에 있는 대로?

○증인 남경민 그건 영치 담당 소관입니다.

○장경태 위원 영치 담당 소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냐고 물

어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규칙예? 본인은 안 하지만.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본인은 그러면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접수계에서? 공문 그냥 쌓아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증인 남경민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문 없고, 그러면 검사가 위증한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민 증인, 받을 때 해당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원형보존 지시받은 적 없다?

구두로도 해도 된다고 했지요, 남경민 수사관?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원형보존 지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민 구두로 지시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받았지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원형보존 지시받을 때 당시의 관봉권 형태가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관봉권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봉권을 일반 국민들이 평생 받아 본 기억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든지 징역 5년을 받든지…… 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보존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받았을 때 관봉권 형태로 안 받았고 원형보존 지시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보존 지시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의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맞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는……

○장경태 위원 제가 받은 제보는 원형보존 지시를 공문 형태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해당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봉권, 해당 압수물을 접수받으실 때 원형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으신 기억은 나는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관봉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오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시를 받은……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최재현 검사가 직접 와서 했어요?

○증인 김정민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수사관이 왔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때 수사관 누구예요? 이름 말씀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정민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장경태 위원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보존 지시한 것 아니에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돈이 관봉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형보존 지시받고 그때 받았던 돈다발의 형태가 무엇이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로 싸여져 있는지 그냥 고무줄로 막았는지 이걸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체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세요.

그때 받았을 때 돈다발의 형태는 비닐에 싸여 있었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잠시만요.

남경민 수사관, 왜 자꾸 아래쪽을 계속 보고 계세요? 뭐 또 보고 계신가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준비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준비한 답변 보신 거예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 돈다발 형태 기억해 내세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형보존은 지시를 받았는데 원형보존, 원상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돈다발이 비닐에 싸여 있네. 아니네, 이게 고무줄에 싸여 있네’ 이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원형보존 지시를 받을 때 원형으로, 원상보존 지시를 받을 때 이 형태로 보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데. 처음 보는 형태는, 관봉권 비닐로 싸여진 건 당연히 기억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그래서 비닐로 싸여 있었습니까, 안 싸여 있었습니까?

○증인 김정민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청에서 원형보존이라 함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거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에 대한 건……

○장경태 위원 받았잖아요.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증인 김정민 예, 접수를 받았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받을 때 비닐에 싸여 있었습니까, 안 싸여 있었습니까? 제가 떠지, 스티커까지 묻지 않을게요. 비닐에 싸여 있는 형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돈이 비닐에 싸여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하고 돈거래 할 때 비닐에 싸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증인 김정민 늘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만……

○장경태 위원 아니, 비닐에 싸여 있는 돈이 많다고요? 저희가 남부지검 지금 현장시찰 갈까요, 당장? 그래서 12월 한 달간 비닐에 싸여 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본인이 책임지실 거예요?

○증인 김정민 그 현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

린 겁니다.

○장경태 위원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비닐에 싸인 현금이 자주 들어오지 않잖아요.

○증인 김정민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장경태 위원 지금 주변 수사관들이 비웃고 있는 것 알아요, 본인이 왜 지금 그것 다 뒤집어쓰느냐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니까.

비닐로 싸인 현금, 돈다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증인 김정민 현재로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비닐에 싸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특이하잖아요. 돈다발이 어떻게 비닐에 싸여 옵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그러면 그 해당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해서 접수한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이라면 김정민 수사관은 해당 최재현 검사실 수사팀으로부터 접수받으면서 원형보존 지시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돈다발 오는구나라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거지요. 그것 아닙니까, 본인 지금 증언대로라면. 그러면 해당 최재현 검사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지요.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상태로 고무줄에 묶어서 돈다발, 그러니까 압수할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물을 압수계에 접수할 때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접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김정민 증인의 발언을, 답변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해한다면 띠지와 스티커는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뒤집어쓰실 거예요?

○증인 김정민 그때 상황이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비닐에 싸인 돈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한 달간 압수물 중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5000만 원 돈다발 있는 것 다 확인할까요, 자료 요구해서?

지금 남부지검 24년 몇 월에 오셨다고 했지요?

○증인 김정민 24년 3월에 왔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3월부터 비닐에 싸여진 관봉권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닐에 싸인 관봉권을 24년 3월 이후에 압류된 물품이 있는지 전체 다 확인해 볼까요? 전수조사 해 볼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본 적이 없지요, 비닐에 싸인 돈을. 24년 3월 이후로 본 적 없잖아요. 비닐에 싸인 현금 돈다발 본 적 있어요? 없지요? 24년 3월 이후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다발을, 그것도 관봉권을 압수계가 접수하면서 봄니까? 못 보지. 근무하시면서 비닐에 싸인 돈다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느냐고요, 24년 3월 이후로?

○증인 김정민 지금 기억상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잖아요.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검찰에 입사하고 나서 비닐에 싸인 관봉권 돈다발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적이 없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기억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당 검사는 ‘원형보존 지시를 했다고, 접수계 수사관이 훼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접수계 수사관들 다 수사하고 감찰해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계 수사관들 계장들부터 해서 다 한번 뒤져 볼까요, 그

럼? 지금 저희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증거인멸의 주 대상자, 주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기억 못 한다면. 만약 최재현 검사가,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나는 그냥 관봉권 비닐 그대로 쳤다, 원형보존 지시까지 했다, 그런데 접수 수사관이 다 훠손해서 압수계의 물건 보존실에 넘겼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증거인멸자가 되어서 징역 5년 선고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증거물 보존하는 데서는 방금 남경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본 적 없다고 해요, 관봉권. 검사는, 수사관은 관봉권 형태로 원형보존 지시까지 하고 그대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이 훠손한 게 되는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남부지검이 관봉권 돈다발을 압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기억 못 하지요. 본인은 그런 관봉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면 해당 검사하고 수사관이 훠손했겠지요. 그것을 박건욱 부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당시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남부지검장이 훠손을 지시했든지. 피혐의자들입니다. 수사 될 것이고요. 본인 기억을 잘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형보존 지시까지 이미 했어요, 검사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보존 지시까지 한 것을 김정민 수사관이 훠손한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박건욱 부장검사, 원형보존 지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최재현 검사가?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남경민 수사관 계속 아래를 보고 계시고 이희동 중인도 아래 뭔가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중인은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아예 다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메모까지는 가능합니다. 메모를 하실 거면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경민 수사관은 아까부터 지금 그 자료를 봐서 그런지 아까 휴대폰 때문인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휴대폰을 이 앞에 보이는 앞쪽 책상에 저희 행정 직원을 통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면 중인이 볼 수 있는 앞에 책상에 두고 이따 정회시간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 가십시오.

○장경태 위원 박건욱 부장검사께서, 원형보존 지시한 것은 알고 있지요?

○증인 박건욱 했다고 보고받았고……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증거인멸, 떠지와 스티커를 훠손하라고 지시하신 적 없으시지요?

○증인 박건욱 그런 적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이희동 당시 차장검사님,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없으시지요?

○증인 이희동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원형보존 지시한 것은 알고 있지요?

○증인 이희동 사후에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는 받았……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증인 이희동 예, 4월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신웅석 당시 남부지검장도 그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감찰도 했고?

○증인 이희동 어떤……

○장경태 위원 4월 이후에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부지검장께서도.

○증인 이희동 예.

○장경태 위원 남부지검장이 그 전에 증거인멸 지시를 할 리는 없겠지요?

○증인 이희동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했을 것 같습니까?

○증인 이희동 위원님, 한말씀만……

○장경태 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그 답변을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희동 차장께서는 모르시는 거지요?

○증인 이희동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는 관봉권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굳이 실물을, 관봉권 사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건욱 부장검사님은 당시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최재현 검사팀에 있는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건욱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관봉권을 잘 압수수색해 간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계에 제대로 접수를 시키면서 원형보존 지시까지, 원상보존 지시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거네요, 지금대로라면?

○증인 박건욱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걸로 알고 계시군요.

아니,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보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접수계가 문제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증인 이희동 위원님, 제가 한말씀……

○장경태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 김정민 수사관하고 하고, 답변 기회 위원장님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제가 아무리 이 사건을 다시 다 재구성을 해 보아도 굳이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보존, 검찰 사무규칙 기억 안나고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를 한다 쳐도 말이 안 되지만 증거물을 원형보존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검찰공무원 준비하실 때 기본 공부하잖아요. 아시지요? 사무규칙 알고 계시지요, 김정민 수사관?

○증인 김정민 예,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전에 공부하신 적은 없고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일하면서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2024년 3~12월 최소한 몇 개월을 접수받아 보시면서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당연히 사무규칙 기억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기억하고 그런데 지금 접수를 받으면서 관봉권 형태, 돈다발 형태 기억도 못 하면서 본인이 띠지와 스티커를 굳이, 온대로 접수를 받아서 보존실로 넘기지 굳이 본인이 거기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증거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훼손하거나 어떤 변형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증거물품에 대한 변형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24년 3월 이후로 접수한 이후에? 그걸 막 알아서 뜯고 떼고 찢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하지요. 한 번이라도 훼손한 적, 변형한 적 있어요? 제가 ‘변형’이라고 표현할게요, 훼손이라고 하면 범죄사실이니까. 변형한 적 있습니까, 증거물의 형태를?

○증인 김정민 어떤 변형 말씀하시는 건지……

○장경태 위원 뭐든, 봉투 형태를 받으면 봉투를 뜯든 찢든 증거물 스티커가 있는데 증거물 스티커를 떼든. 중 1, 중 2 이렇게 나올 때 그 스티커 임의로 뜯습니까, 수사관이?

○증인 김정민 그렇게 고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않지요. 상식적으로 않지요, 당연히.

그러면 24년 3월 이후로 관봉권 비닐에 싸인 형태로 돈다발을 받은 기억도 없고 접수된 적도 없습니다, 남부지검에. 이 건이 거의 유일해요, 본인이 근무한 이후에는.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비닐 형태의 돈다발이 압수물에는 대상에 있었고 접수한 기억은 없으면 그러면 해당 검사·수사관이 저희한테 위증하는 거지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비닐 형태 돈다발 받은 적 없으시지요?

○증인 김정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돈다발, 그러니까 돈이 비닐에 싸여 있는 것 없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없지요?

○증인 김정민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남경민 수사관, 관봉권 몇 번이나 보셨어요?
- 증인 남경민 본 적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이번 것 말고 근무하시면서.
- 증인 남경민 예, 본 적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한 번도 없으세요?
- 증인 남경민 예.
- 장경태 위원 비닐에 싸인 것 한 번도 없어요, 남부지검에?
- 증인 남경민 비닐에 싸인 건 자주 봅니다. 경찰……
- 장경태 위원 관봉권 형태로요.
- 증인 남경민 관봉권은 본 적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은 분명하네요, 맞습니까?
- 장경태 위원 랩에 싸서 오는 것 말고요 관봉권.
-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 흔치 않은 일인 건 맞지요?
- 증인 남경민 예.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압수물이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에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한 이후에?
- 증인 남경민 대출을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있어요, 없어요?
- 증인 남경민 관봉권이요?
- 소위원장 김용민 예.
- 증인 남경민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한 번도 없어요?
- 증인 남경민 예.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들어온 이후로 관봉권 그 돈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 증인 남경민 예.
- 소위원장 김용민 그대로 보관돼 있는 것이고?
- 김정민 수사관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 증인 김정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압수물 보관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 증인 김정민 압수계요?
- 소위원장 김용민 예.
- 증인 김정민 모든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로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 압수물 보관창고에는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증인 김정민 보관창고는 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권한이 있느냐고요?
- 증인 김정민 보관창고는 영치 담당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검사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 증인 김정민 따로 신청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 증인 김정민 그것까지는 제가 영치 쪽 담당을 해 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 이희동 차장검사님.
- 증인 이희동 예.
- 소위원장 김용민 검사 경력 몇 년이나 되시지요?
- 증인 이희동 22년 좀 더 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관봉권 떠지 훼손 이 사건 말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희동 떠지 훼손 말씀이십니까?
- 소위원장 김용민 예.
- 증인 이희동 본 적은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처음 본 사건이지요?
-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언제 최초 보고받으셨어요?
- 증인 이희동 올해 4월 말에 보고받았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는 차장검사 시절인가요?
-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남부지검 차장검사?
- 증인 이희동 예.
- 소위원장 김용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증인 이희동 당시 담당 부장이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검사장이 같은 날 대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내부 자체 진상조사도 안 했어요? 그 정도면 바로 감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 증인 이희동 담당 부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검사장한테 보고를 했고 검사장이 관련 내용을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때 조사했을 때도 김정민 수사관이 단독범행이었나요?
- 증인 이희동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서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는 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그런데 사건과 압수물 담당에서는 원형보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원형보존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형보존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물 담당이 계수를 한 다음에, 계수를 하고 그것을 보존을 했는데 압수물 담당은 그게 현금 액수만 중요하지 떠지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제 질문은 그래서 김정민 수사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고요, 그때도?

○**증인 이희동** 범행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 당시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떠지가 훼손되었다는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떠지 훼손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누가 훼손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이 단독으로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느냐고요.

○**증인 이희동** 그 보고서에는 압수물 담당에서 떠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했네요.

그러면 그때 징계했습니까?

○**증인 이희동** 당시 검사장이 대검에 보고를 하고, 금요일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를 하였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대검에서 논의한 결과를 알려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논의한 결과는?

○**증인 이희동** 논의한 결과는 대검에 관봉권 폐기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수사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덮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증인 이희동** 그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김용민** 백해룡 경정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제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질의하지는 않을 건데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 만약에 질의가 안 나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오래 하셨던 경찰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조금 이따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이광철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후 징계 청구가 있었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12월 24일 날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3월 8일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취소가 돼서 다시 복귀하는 것과 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인 것처럼 대검찰청에 다시 복귀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말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공익 신고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사건의 수사기록을 아마 통째로 갖다주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 저 신문보도를 보시면, 1월 11일인데요, 그 당시에 법조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자신의 건재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험집 내기 위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런 식의 언론보도, 보수언론을 통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 신고가 되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법조 기자들과 국민의힘 주변 정치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저 기사는 1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20년 12월에 당시 장준희 부장검사가—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공익 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2020년 12월 초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공익 신고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1월 11일 자 오프라인 인쇄 기사인데요. 저게 월요일이고 그 직전에 인터넷 조선일보에,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바이라인이 양은경 기자인데요, 양은경 기자가 입수했던 공익 신고서를 통째로 인용해 가지고 인터넷 언론보도를 한 게 지금도 인터넷상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공익 신고서를 봤는데 온통 수사기록을 통째로 인용해서 이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윤석열 그리고 공익 신고를 했던 장준희 그리고 당시 수사팀 이분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둔 상태입니다.

○박은정 위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자신이 이후에 정치에 나서게 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정치수사를 감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과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보수언론과 함께, 언론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검찰권력이 함께 정치수사를 해서 여러 명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올해 6월 5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은 무죄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신데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석열이라는 회대의 검찰총장, 정치검사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나서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광철 변호사님이 어떻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철 저는 이 사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조선일보 1월 11일 자 기사를 가지고 사건이 이제 대검에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졌고요.

제가 그때 민정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노라’ 이렇게 입장문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상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야무야되었던 것 같고.

당시 안양지청의 관할을 안양지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으로 보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규원·차규근 두 사람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계속 언론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가지고 저는 당시에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김학의가 출국을 못하게 막았던 것 자체가 이렇게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가사 범죄가 된다면 제가 그날 밤에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민정수석으로 계시는 대검 봉우 차장이나 당시에 법무부 검찰의 고위 검사들이 다 이 출국금지를 승인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차규근·이규원이 실행을 했고 그 지시와 배후 조종을 이광철이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매일 같이 쏟아져 가지고 정말 하루도 제 이름 석자, 얼굴 그리고 이규원·차규근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1면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제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그때는 하도 많이 언론보도가 나와서 주변의 지인들도 걱정을 해 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꿈속에서 멀리서 펜파칼을 든 무리들이 막 북을 둥둥동 울리면서 저를 쫓아와 가지고 제가 절벽에서…… 이렇게 잠을 깬 일도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정말로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직이라고 이규원·차규근에 비해서 검찰이 한번만 조사해서 실제 끌려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참고인 조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힘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광철이 민정수석실 가더니 음험하고 위험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저에게 전해 주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이, 저보다 고통을 겪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는지가 이 사건 무죄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사건 관할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지청입니다. 안양지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수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의 관할이,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상 1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2차장검사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광철에 대한 집중적인 표적 수사는 이광철을 빼고 그 위의 윗선까지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광철 아까 앞서서 제가 울산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 그때 당시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끊임없이 민정수석실을 노렸고 민정수석실을 범죄 집단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도 당시에 조국 수석으로까지 위로 수사를 뺏쳐 나가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정황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2021년 3월에 검찰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이런 사건들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프레임을 만

들고 ‘그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본인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이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데요. 경찰에서 그 사건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2013년 말씀……

○박은정 위원 2013년도에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지요,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나요?

○참고인 이광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2012년에 이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이 실제로 그 때 당시에 윤 모 씨라고 하는 분 내연녀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이 되었고 2012년 말에 그 동영상이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져 나갔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동영상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TV조선 등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지 제 기억으로 13일 만에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었고.

그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청와대 과장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김학의 씨에 대한 낙마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유포했다라는 의심을 실제로 과장도 민정수석실이 했고 그래서 김학의 수사팀을 전부 다, 당시에 과장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팀을 다 해편합니다. 경찰청장 자르고 또 수사국장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하고 당시에 특수수사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사팀을 전부 다 해편했고.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을 때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 결국 김학의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될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일구 경정이 홀로 남아서 결국 부패 수사는 하지 못하고 성폭력 수사만 해 가지고 송치의견으로 그때 검찰에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경찰은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보완수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있는 김학의가 가르마가 어때니, 얼굴이 어때니, 영상이 흐리니 이러면서 김학의가 아니다, 김학의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불기소이유서를 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검 차장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지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를 처분했던 이 검찰은 이제는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지…… 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심지어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 후에 김

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저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지 말자고, 수사권을 달라고,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 잘하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달라고,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을 경험한 이광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도 수사지, 보완수사가 수사와 별개가 아닙니다. 수사개시가 국민적인 염원이고 또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수사개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저 말씀하셨던 노만석 대검 차장님, 검찰총장직무대행님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 7월 달에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민군합동조사단이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을 통해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민 쪽의 조사를 맡으신 담당자분이 바로 저 노만석 검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독립수사단을 꾸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현천 전 보안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한민구·김관진, 당시에 계엄을 추진했던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전부 참고인 기소중지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끽냈던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권리가 아니고 의무일 정도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수사를 맡아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면 윤석열이 과연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었을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조현천 계엄문건 사건은 조현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예비로 저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은 해외에 출국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내란 부분만 빼고 조현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계엄을 획책했던, 내란을 예비했던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제 와서 수사권을 달라고, 보완수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검찰은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잠깐 계시고요. 제 마지막 질의이긴 한데요. 저도 시간 넣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는 게 검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이광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를 따지자면 저는 권한 집중에서부터 먼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독점하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권한의 집중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 누구도 처벌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속에서 김학의 같은 사람들이 ‘아,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속에서 오는 선민의식 그리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실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속에서 조직과 권한과 검사 개인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창민 변호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필성 변호사님과 황문규 교수님, 세분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완수사 얘기가 나오긴 했지요. 그것과 포함해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선개입, 아까 경향신문 사건 수사했던 것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건도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지요?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했어요. 진격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반론은 여러 차례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왜 수사를 막지 못했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사실 수사권은…… 그러니까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는 기밀사항이고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해 봐야지 아는 것이고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봐야지 안다라고 왕왕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직접관련성, 즉 부패·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그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직접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은 1년 9개월간 사실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 수사를 당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고 일부 외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적으로, 딱 그 범위 내에만 보완수사를 하고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자, 이 정도의 보완수사권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송치된 사건을 넘어서 수사를, 지금처럼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하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이창민 못 막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보완수사요구 자체도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도 하고. 직접수사권, 즉 보완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완수사권이나 심지어 보완수사요구권까지도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태인데요. 보완수사요구도 사실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한

다거나 암묵적인,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국과수에 다시 한번, 계속계속 국과수 감정을 받아 보라는 취지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당연하고요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참고인 김필성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김필성 지금 검찰청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의 특성상 이게 하다 보면 계속 확장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또는 이런 표현을 들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접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주체는 검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검사가 ‘내가 보기에 직접관련성이 있어. 이거는 관련이 있는 범죄야’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사실 아까 시행령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정권까지 바뀌었을 경우에 정말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특히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실 이차적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검찰개혁 방향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중언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 검찰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난 3년, 4년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황문규 교수님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황문규 수사라는 게 수사를 하면 나쁜 범죄자들을 자기가 검거해서 반드시 처벌에 이르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그 범죄자 처벌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남용되는 건데 본인은 알 수가 없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는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직접수사와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소권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보완수사권이든 직접수사권이든 분명히 수사를 의도하게 되면, 타깃을 정하게 되면 과잉수사로 나타나고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과소수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에 대해서 일각에서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김필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한계를 어기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중에 2년, 3년, 4년 뒤에 대법원 판결 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한들 또 다른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여지를 없애야 된다.

보완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직접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기 싫으면 ‘나는 수사를 안 하고 수사통제, 공소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진형 변호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해시장 사건 얘기를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표적 수사를 했는지 물증이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면 건설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2016년 6월 2일 19시에, 저녁 시간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장소에 도착했고 수사 시작은 20시 10분, 1시간 10분 기다렸다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3시 50분까지, 새벽까지 저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검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김 씨에 대해서 심지어는 딸이 타고 다니는 외제 차 그것 어디서 난 돈으로 샀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그날 내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 주시지요.

내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다시 조사가 이어집니다. 4시 1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요. 이 새벽 시간에 5시 20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보여 주시지요.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설 이틀 전에 김해시장의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전달했고, 2013년 추정 김해 소재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전달했고 그다음에 5월경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그날 작성합니다. 세 번, 총 4000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그날 작성한 내사착수 수사보고서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지요? 6월 3일 날 새벽 조사가 끝나고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그날 작성한 검찰 내사착수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그때 작성한 내사착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2013년 여름경 시장실에서 1000만 원 줬고 그다음에 2014년—날짜도 바뀌지요—설 명절 전에 김해시장의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줬고 그다음에 2014년 4월에서 5월경 2000만 원 줬고,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6월 4일 이후에 김해시 소재 식당에서 1000만 원을 더 주었다. 같은 날 진술서를 받았는데 내사보고서가 달리 작성됩니다. 아까는 3회에 4000만

원, 지금은 4회에 5000만 원을 쳤다라고 작성이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같은 날, 같은 날에 벌어진 겁니다. 진술서는 저렇게 세 번 주었다라고 했고 수사보고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번 주었다라고 합니다.

장소도 왼쪽에 보시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는 ‘시장 주거지’ ‘김해 소재 식당’ ‘장소 불명’인데 오른쪽에 작성된 건 ‘시장실’이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던 ‘시장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시장실’ 그다음에 ‘김해시장 주거지’ 또 ‘시장실’ ‘김해 소재 식당’.

금액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쳤다고 했다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쳤다라고.

이게 어떻게 이 진술서를 보고 만든 수사보고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게 3개월 정도 뒤에 기소된 공소장인데 내용이 아까 그 인지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봐요. 검찰 수사보고서, 인지보고서에는 ‘2013년 여름경’ 이게 오른쪽에 ‘6월경’이지요. 그리고 ‘2014년 설 명절 며칠 전’이 왼쪽 수사보고서인데 오른쪽에는 ‘2014년 1월경’, 맞아떨어지지요. 왼쪽에 ‘2014년 4~5월경’, 공소장에는 ‘2014년 4월경’,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 왼쪽에서 ‘2014년 6월 4일 후’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2014년 9월경’, 맞아떨어집니다.

왼쪽에 장소가 ‘김해시청 2층 시장실’ 오른쪽에 ‘시장실’, 왼쪽에 ‘주거지’ ‘시장실’ ‘식당’, 네 가지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현금 부분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오른쪽에 공소장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작성한 이 진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진술서인데요. 6월 3일 날 작성한 이 진술서는 그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이 인지보고서, 내사보고서만 살아남고 건설업자의 진술이 내사보고서에 다 맞춰져서 최종 공소장은 이 내사보고서대로 작성이 됩니다.

김진형 변호사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참고인 김진형 예, 맞습니다.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반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사 자료라고 한다면 진술서에 따라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소장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최초에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장 직전에,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약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최초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설업자가 수사보고서에 따른 진술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사보고서에 따라서 진술서가 변경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이런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김진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임관혁 검사지요?

○**참고인 김진형**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임관혁 검사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한명숙 총리 사건에 등장하는 임관혁, 그 임관혁 맞습니다. 그 임관혁이 부산지검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수사해서 조작을 해 냅니다. 이것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조작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한명숙 총리 사건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지요? 신웅석,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서울남부지검장이 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 훼손시키고 있는 범죄 집단처럼 진짜 변질돼 버린 것 같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님 들어가시고요.

백해룡 경정님 나오셔서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아까 관봉권 떠지에 대해서 한 2분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후 시간에 충분히 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 2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백해룡** 제가 관봉권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한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닐로 싸 가지고 그대로 본점으로 보내고요. 지점으로 가는 돈은 채 5000만 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점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본점에서 아마 나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관봉권이 있는 돈을 발견했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저 관봉권의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겠다…… 돈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봉권에 붙어 있는 그 비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가 만졌을까요? 그 지문 과학수사 해야지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 그대로 압수를 했을 거고 압수 목록에 어떻게 쓰여 있겠습니까? ‘현금 5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비닐에 싸여 있는 떡가 붙어 있는 현금 5000만 원’ 이렇게 압수 목록에 구체적으로, 압수를 하지요. 그것 가지고 와서 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해체해서 셀 수는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그 돈의 액수 그다음에 해체해서 셨을 때 그 비닐과 그다음에 관봉권 모두가 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다, 없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오후 시간에 더 추가질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직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후 시간에 저희가 추가질의를 할 때, 보충질의를 할 때 충분히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박은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까지만 좀 진행하고 해 주십시오.

보충신문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1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오전에 나왔던 내용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떼지 사건 관련 조사 결과 서면보고서 일체. 두 번째, 관봉권 등 현금 압수 당시 압수물 원형보존 지시가 담긴 공문. 세 번째,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후 압수물 목록. 네 번째, 2024년 12월 18일 압수계에 압수물 수리를 지시하며 준 문건 혹은 서류 일체. 다섯 번째, 관봉권 포장한 비닐의 지문 채취 여부. 여섯 번째, 2024년 12월 기준 서울남부지검 검사·수사관 배치표 등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하실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 조금 이따가 더 있으시면 그것 모아서 한 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보충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허재현 기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마무리를 못 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검찰로부터 민주당과 공모하여 마치 조작 보도를 한 것처럼, 나중에는 진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마는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그렇게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묘하게도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완전 조작 보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이 또 다른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상당히 뜨겁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언론들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참고인 허재현 저도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오늘 청문회의 어떤 중요 의제의 프레임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저의 사건을—제가 참고인으로 나왔지만—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중요 참고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거든요. 저희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개입된 기자들이 아니라 검찰의 조작 수사에 휘말린 기자들이고, 그 당시에 바로 2023년 10월 11일 그때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일이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문 화면에는 민주당과 기자들이 대선 여론조작·공모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라는 게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일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에 그러한 검찰의, 보수세력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일부러 보수 언론을 통해 유출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선거일에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도록 만들려고 그날 압수수색을, 그렇게 영장에 허위 사실을 써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언론플레이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오늘 공청회에 어떤 중요 증인을 설명하는 수식어의 프레임에도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광철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기 시작과 함께 민정비서관을 담당하시면서 검찰개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주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이광철 주도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수사권 개혁을 포함한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보좌했던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 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 아픈 성찰, 회고를 가끔 한번 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검찰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거대한 반동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당시 검찰개혁 업무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대표할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저 또한 늘 성찰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법무부에 재직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에 출마하셨던 당시 대선공약과 그때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대선공약을 구체화해서 마련했던 국정과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에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조직적 기관으로 검찰을 좀 견제한다라는 것도 포함돼 있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수사·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검찰에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겨 둔다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으로 발표됐던 게 2018년 6월 21일 자 이낙연 총리께서 발표하셨고 그때 박상기 장관님하고 김부겸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네 분이 참여해서 발표했던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었고. 검찰의 일차적 수사권들을 전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상호협력 관계로 검경의 관계를 전환하고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의 수사종결권을 주고 그러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국가의 중요범죄에 한해서 매우 엄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라는 점을 골자로 해서 2018년 6월 21일 자 정부의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부분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렇지만 당시에 두 가지 요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남겨 두는 문제에 있어서 2017년도 국정농단에 대한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중앙검사장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고려가 되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시고 경찰의 수사 역량은 조금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6대 범죄 중심으로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은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그때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박군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사실은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정치사냥 수사를 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고 검찰이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이나 지난 3월 초에 윤석열을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를 활

보하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부 다 육을 먹고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검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물론 내란이 발생한 이후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지검은 다른 데와 달리 작년 연말에 건진법사를 상대로 영장도 청구하고 뭔가 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라고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몸부림이라도 보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관봉 띠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작은 칭찬할 여지가 없어져 벼랑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봉 띠지 혼손 사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띠지를 혼손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 줘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거든 진상을 소상하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게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김정민 수사관님, 많은 전직 수사관님들,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띠지·스티커 분실 사건의 주 혐의자는 김정민 수사관이다’. 최선영 계장이 자기는 압수물을 제대로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형보존 지시까지 다 내렸다. 그리고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님들은 본인들은 ‘잘 보존했다. 그러면 접수계가 잘못, 혼손한 것 아니겠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혼손했습니까?

○증인 김정민 제가 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보존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보존은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이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증인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 건도 거기서 됐지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대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증인 김정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박건욱 부장님,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티커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떠지는 사진 안 찍으셨나요?

○증인 박건욱 어느 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위원 돈다발 떠지요.

○증인 박건욱 시중은행 떠지, 그때 압수한.....

○장경태 위원 그때 비닐로 싸여 있어서 떠지까지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지요?

○증인 박건욱 관봉 속에 있는 떠지는 비닐을 뜯지 않는 이상 찍을 수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스티커 사진만 있거든요. 지금 떠지 사진이 없어서..... 떠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건욱 그 내용도.....

○장경태 위원 그런데 못 찍으신 것은 비닐로 싸여 있는, 이미 래핑돼 있는 돈다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증인 박건욱 그건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연락드린 겁니다.

그때 4월 말에 며칠날 확인하셨다 했지요, 정확히 날짜가?

○증인 박건욱 4월 24일 날 조회 시간에 제가 검사장님께 이게 폐기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JTBC에서 관봉권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그때 파악했던 내용인 폐기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검사장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좀 확인해라’ 이렇게 해서 4월 25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당시에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는 부장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부부장께서 하셨어요?

○증인 박건욱 사실은 감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내부적인 조사는 하셨다고 1차 조사를 하셨고, 해당 팀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증인 박건욱 진상, 경위 확인은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하셨지요?

○증인 박건욱 그것은 최재현 검사의 후임 검사인 안준석 검사실에서, 담당 수사관도 있고 해서 거기서.....

○장경태 위원 안준석 검사가 조사해서 김효진 부부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증인 박건욱 아닙니다.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직접 보고했어요? 그러면 김효진 부부장은 보고를 못 받은 거네요?

○증인 박건욱 그 보고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경위도 안 받았다고요?

○증인 박건욱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박건욱 부장검사께서 안준석 검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냥 ‘띠지·스티커 분실했습니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증인 박건욱 그 경위를 확인하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25일 날 조회 시간에 검사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나서 신 검사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증인 박건욱 그것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였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까지 보고를 같이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지휘했던 팀이 특검에도 상당수 들어가 있지요?

○증인 박건욱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의 주시하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치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 점들을 특검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한 이유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아마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상설특검이든 어디든 저희가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위 보고받으시고 검사장에게 보고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른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지요?

○증인 박건욱 그것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경태 위원 예.

○증인 박건욱 25일 날 보고드렸고 그때 중요한, 청탁금지법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 수사계획을 작성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날 신 검사장이 대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 지나서 저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박건욱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장경태 위원 제가 다른 수사 내역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증인 박건욱 그것과 관련해서……

○장경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건욱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 저희들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월요일 아침에 영장을 준비, 보고드리는 과정에 신 검사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대검에 관봉 폐기 경위도 다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요한 현안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집중하고 여기 수사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 특활비가 12월 3·4·5·6일 4일간 3억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사용 건의 특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곧 밝혀지리라 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동 차장님은 어떻게……

○증인 이희동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장경태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실지를 몰라서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박건욱 부장께서 바로 파악을 하고 나서 차장검사께는 보고를 하셨나요, 바로 검사장께 직보하셨나요?

○증인 이희동 그 사건은……

○장경태 위원 차장님, 파악은 하셨지요?

○증인 이희동 예,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매일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장이 검사장한테 직보를 하고 저는 옆에서 같이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같이 들었다는 거지요?

○증인 이희동 예.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지금 검사 측은 떠지를 왜 사진 안 찍었냐에 대해서 비닐로 패킹돼 있었기 때문에 저 스티커밖에 못 찍은, 그 사진 그대로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계에 제대로 접수를 했는데 압수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 해당 최재현 검사나 최선영 계장이 갑자기 비닐 패킹을 뜯어서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떠지·스티커를 이 두 분이 벼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압수계가,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아 가지고 다음 날 그대로 압수계에 바로 제출하는데, 심지어 원형보존 지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은 원형보존 지시가 그냥 돈만 세라고 하는 건 줄 알아서 스티커·띠지 훼손했냐, 패킹 비닐 패키지 뜯었느냐라고 했더니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없거든요, 지금.

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증인 이희동 예, 위원님.

김정민 수사관 증언 취지는 그 당시 압수물 처리할 게 많아서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위원 차장님,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패킹된 것을 기억 못 합니까!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우롱합니까, 국회를!

○증인 이희동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어차피 10월 내내 불려 다니실 거예요, 국정감사 내내. 청문회도 할 거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처럼 불려 다니겠지요. 그때 다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증인 이희동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 근무합니까? 그게 지금

단순 사건입니까? 건진법사가 관봉권을 받아 가지고 비닐 패킹된 5000만 원을, 심지어 압수수색해 가지고 결정적 단서인 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권력형 비리인데 그걸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아무 사건인지 몰랐어요,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수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옷 벗어야지요, 수사관이. 검사가 그런 기억도 못 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차장님도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브로치·목걸이를, 목걸이를 기억 못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관봉권 5000만 원 패킹된 것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사람……

지금 다 한번 보세요. 블라인드 보셨지요, 검찰?

남경민 증인, 검찰 블라인드 보셨지요?

○증인 남경민 예,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이디 추적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증인 남경민 아니요,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비웃어요, ‘기억 안 난다’. 대한민국 어떤 지검에서 압수계를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 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 가지고 원형보존 지시한 것도 기억 못 한다고 하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불잡고 물어보세요. ‘아, 저 수사관들은 지금 부장검사랑 차장검사랑 짜고 와 가지고, 입 맞추고 들어왔구나. 자기들은 원형보존 지시가 돈다발만 세라는 줄 알고 떠지, 관봉권 패킹 비닐 다 찢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이게 다,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다 위증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증거자료 다 나오면서? 송호종, 임성근 연말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버젓이 만나서 사진 찍혀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두 분도, 수사관들 다 제보 옵니다. 왜, 말이 된다고……

저희를 잠깐은 눈속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전체로 다 보고 있고 전직·현직 수사관, 검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것은 이희동 검사, 박건욱 부장이 거짓말 한다’, 저한테 그래요. 법조계·언론인들부터 해서 전현직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 두 분이 그렇게 허투루 수사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검사로서 나름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다 기억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면 더 주의해서 봤을 거다’.

두 수사관들도 최선영 계장이 인계할 때도 ‘이 사건 증거 보존 물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 달라’, 예를 들면 최선영 계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증거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더 엄중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서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입법청문회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앞으로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다른 것 질문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 불분명한 것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랑 남경민 수사관, 올 4월 달에 조사받았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김정민 수사관, 내부 조사 받았어요?

○**증인 김정민** 받은 적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받은 적 없어요?

○**증인 김정민** 예.

○**증인 남경민** 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까 그 보고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증인 박건욱**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진짜 받은 적 없어요?

○**증인 남경민** 최선영……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세요. 김정민 수사관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정민** 예, 받은 적 없습니다.

○**증인 남경민** 최선영 계장님께서 압수계에 오셔서 사실 확인하시겠다고 김정민 수사관 불러 달라고 해서 얘기 들으신 적은 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때 얘기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보고서에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그때 뭐라고 얘기했고 보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김정민 수사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김정민** 계장님의 ‘띠지 벗기지 말고 돈을 그대로 둬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느냐며 꾸며보셔서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제가 압수계 1년 일하면서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만 얘기했고, 내가 띠지를 훼손했다라는 얘기는 기억 안 난다라고 오늘처럼 얘기하셨어요?

○**증인 김정민** 그런 말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물어보지도 않았고?

○**증인 김정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남경민 수사관.

○**증인 남경민** 그런데 제가 남부지검 감찰 과정에서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세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 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증인 김정민**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억이 없는 게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들은 적이, 들은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증인 김정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확실해요, 그것은?

○증인 김정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남경민 수사관도?

○증인 남경민 들은 사실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다 지금 두 분한테 떠밀고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관봉권 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뛰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두 분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이것 없애고 지금 와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진실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수사관 선에서 과연 이것을 없앤 게 맞을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의 이어 나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금조금씩 아까보다는 진전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 나올 때 그때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실 발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고 자리를 바꿔 달라고……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까 나오셨던 다른 분들께 질의를 해야 돼서요.

그렇게 하고 잠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희동 검사, ‘이 증거물을 그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지시했다고 들었습니까?

○증인 이희동 저는…… 언제 말씀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 관봉권 떠지.

○증인 이희동 그 떠지가 분실된 것은 4월에 제가 알았고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서영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이걸 그대로 보관해라’라고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이희동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는 그런 전달을 했다는 것이었고……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희동 압수물 담당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됐어요. 그러면 정리해야지요.

아까 박건욱 검사도 ‘보관해라’라고 들었다고 했지요?

○증인 박건욱 예.

○서영교 위원 그랬을 때 남경민 수사관, 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증인 남경민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증인 김정민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그러나 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지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증인 남경민 원형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앞에 것으로 돌려 주세요.

저거예요.

그다음도 한번 넘겨 줘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챙니까?

○증인 남경민 세야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렸군요, 그렇지요?

○증인 남경민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세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 비닐을 다 뜯어서 풀렸지요? 비닐을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렸지요, 그러면?

○증인 남경민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증인 남경민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것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증인 김정민 기억에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앞에 것으로 다시 돌려 주세요.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이 쳐져 있어요. 저런 것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안 돼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런 모양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압수물 했고 저런 모양을 아끼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에 싸여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국민 여러분, 이 두 수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들의 문제입니다. 저 비닐 뜯어서

세었다고, 그렇지요? 비닐 뜯어서 세었지요, 김정민 수사관? 비닐 뜯어서 세었지요?

○증인 김정민 그 당시 상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닐 뜯어서 세었어요, 안 세었어요? 비닐 뜯어서 세었어요, 비닐 뜯어서 안 세었어요?

○증인 김정민 저게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기 지문 인식 확인하면 다 나와요. 지폐 세었다면서요. 세게 돼 있다면서요, 사무규칙에.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저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저렇습니다. 돈이 비닐에 싸여져서, 저렇게 비닐에 싸여진 것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김정민, 그렇지요? 저렇게 비닐에 싸여진 것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말고 다른 때도?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 한다고 하고요. 저것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관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사관에게 ‘내가 저것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라고 말한 검사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지요. 이희동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관이 저렇게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이희동 예,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장이 대검과 논의한 후에 알려 주신 것이 당시 그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아까는 2018년 돈이라면서요?

○증인 이희동 아니, 2018년 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2018년 사건이라서 저 관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때.

○증인 이희동 위원님, 제가 아까……

○서영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스티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닐에 싸여진 5000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 돈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돈이 1억 6500만 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3억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증거만 인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것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발뺌을 하는 사람이 수사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 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해 보세요.

○증인 이희동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봉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 다음에 샤텔백 2개를 받은 것을 확인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정인을……

○서영교 위원 그렇게 추가로……

○증인 이희동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봉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해 놨고 떠지는 촬영을 안 해 놨지만 떠지는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 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없고……

○서영교 위원 라벨지를 찍어 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더 얘기해 보세요. 지장이 없어요?

○증인 이희동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 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서영교 위원 이희동 검사님!

○증인 이희동 굳이 관봉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수사한 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열심히 수사한 것을 알아요? 전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증인 이희동 저희가 샤텔백을 전성배 씨가 준 것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잠깐 보세요. 보세요.

○증인 이희동 김건희 씨가 교환해 간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구두로 가져갔고……

○서영교 위원 그것은 기본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것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증인 이희동 전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것을 특검에 넣었고 특검이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5월 22일 저것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지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요?

○증인 이희동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보세요, 22년 5월 13일……

○증인 이희동 지금은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여기서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뒤에 자리를 좀 바꿔 주세요.

뒤에 김광민 변호사님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재현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두 수사관 그리고 검사는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건지 판단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김광민 변호사가 가운데 쪽 앉아 주시고 허재현 기자님……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조경식 부회장과 관련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지요?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 찾아서 올려 봐 주시고요.

조경식 부회장님은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증인 조경식**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증인 조경식**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룹은 KH그룹인가요?

○**증인 조경식** 예, KH그룹, 제일 처음에는 쌍방울그룹이었지요.

○**서영교 위원** 쌍방울그룹.

○**증인 조경식** 22년도 12월이었지요.

○**서영교 위원** 쌍방울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 시지지요?

○**증인 조경식** 예, 지금.

○**서영교 위원** 둘이 만나셨지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조경식 부회장님의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증인 조경식** 아,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쪽이라고 하시면?

○**증인 조경식** 권 박사님의 베프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사이의 친구고요.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 저 사진이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서영교 위원** 롯데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찍어 준 사진이군요?

○**증인 조경식** 예.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말씀 내용이고,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이.

○**서영교 위원** 저 사진을 찍어 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 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증인 조경식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돌려 주셔서 녹취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녹취를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증인 조경식 권성동 의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증인 조경식 권성동 의원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까? 예.

(영상자료 상영)

저 녹취는 몇 월 며칠날 녹취입니까?

아까 것 틀어 주세요, 그대로.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경식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것은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기서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 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증인 조경식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증인 조경식 그 당시에요?

○서영교 위원 예.

○증인 조경식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조경식 저희 KH그룹의,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동계올림픽, 400만 평의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 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얘기가 저렇게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만나 뵙게 된 거지요, 시작은.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서 만나 뵙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면서 또 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조경식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수배자로.

○서영교 위원 적색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증인 조경식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증인 조경식 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증인 조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증인 조경식 지금 존엄이신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이따가 아예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충분히 쓰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좀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지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마무리를 적절한 시점에 해 주시면……

○서영교 위원 저는 또 이따가 질의를 할 텐데요. 박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게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나오는데요. SBS 인터뷰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경식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따가 또 한 번 질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김광민 변호사님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KH그룹 회장이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조경식 부회장님은 마음이 아

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증인 조경식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다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지만 살려 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가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다음 타깃이 저희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들이 대북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그분이 보낸 문자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것 하나 없다고 하자고’. 그게 작년 제주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것을 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마음에서 그걸 터트리려고 그랬었는데 제주에어 비행기가 떨어진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워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수사를 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조경식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또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어서……

○박은정 위원 먼저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아까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 죄송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하여튼 서영교 위원님 이따가 질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따 한 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추가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러면 앞의 한 1분 정도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소위는 그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박상용 수원지검 주임 검사였지요—탄핵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 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참고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약간 감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참고인 김광민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었던 것은 최초에……

○서영교 위원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광민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광민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 연어회와 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화면 들어 봐 주세요. 잘 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25인분 들어갑니다, 회와 초밥.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광민 그 당시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신 겁니까?

○참고인 김광민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조경식 부회장님, 참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17인분……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증인 조경식 그분들만 드신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25인분, 68인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조경식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주변에 인물이요?

○증인 조경식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서영교 위원 예?

○증인 조경식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서영교 위원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이 회 도시락을 그분들에게 나눠 준 겁니까?

○증인 조경식 그래야 말 안 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 사람들도 받아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도 받던가요?

○증인 조경식 어느 분이 주도를 하시니까 되겠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17인분은 검사,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정도 드셨겠네요?

○증인 조경식 이 모든 게 안부수의 작품이었고요. 이 대북사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부수의 작품이고 나머지 김성태나, 역시 모두 다 이용당한, 사기당한

진짜 치졸한 사건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북과 주가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북과 사업을 펼치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조작이 되고 그 과정에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지요?

○증인 조경식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큰 용기를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초밥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 도시락은 어디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증인 조경식 강남에 ‘어도’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이용한.

○서영교 위원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인 조경식 예, 거기의 대표는 배정철이고요.

○서영교 위원 강남 횟집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강남 횟집 사장도 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김광민 변호사께서 회를 그쪽 법인카드로 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참고인 김광민 23년 전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수사기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기록에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군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참고인 김광민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

○서영교 위원 대북송금 사건에서 재판부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요구하신 거였지요?

○참고인 김광민 이게 사실관계가 약간 어긋나 있는데요. 그 당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23년 6월경에 연어초밥 이런 걸 확인……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23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기로 기록해 놓은 그때……

○참고인 김광민 그 건은 법인카드로 확인이 된 건이고요.

○서영교 위원 그때 법인카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인 김광민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재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동시에 출석한 날에 대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고 쌍방울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출정해서 다시 교도소 돌아갈 때까지 수원지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를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어도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저희가 추적해서 받아 낸 자료 말고 그 외에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쌍방울이 어도에 자주 갔다라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확인했는데요.

변호사님, 이화영 의원 변호 접견 가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

지입니까?

○참고인 김광민 9시부터 5시 좀 넘어서까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접견이 밤 9시에 있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인 김광민 저희 같은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밤 11시 55분까지도 접견한 기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을 그리고 구치소장을 지휘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2023년 5월 29일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 자료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오고 9시 43분, 같은 시간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쌍방울 범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연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서 오늘 조경식 부회장께서 아주 큰 결단으로,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 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결합된 내용 그리고 검사가 결합된 내용 그리고 정치인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오늘 증언하신 자리입니다. 이후에 제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광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참고인 김광민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얘기한 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기가 생각 안 나는데 제주항공 추락했을 당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냐하면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이미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JTBC에 제보하기 위해서 JTBC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보도자료까지 줬었는데 그래서 JTBC도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제주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묻혀 가지고 보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취지는 예컨대 윤석열이 탄핵돼서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시기에 맞춰서 당신께서 제보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제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용민 잠시만요. 그 전에……

○서영교 위원 저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시만요.

이희동 차장 어디 계세요?

○증인 이희동 예.

○소위원장 김용민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증인 이희동 아까……

○소위원장 김용민 박건욱 검사는 왜 자리를 옮기십니까? 그 뒤에서 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증인 이희동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이 휴대폰 제출하셨어요?

○증인 이희동 예.

○증인 박건욱 예.

○소위원장 김용민 언제 제출하셨어요?

○증인 이희동 아까 시작 전에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이 지금 뒤에서 서로 말 맞추고 계신 것 아닙니까?

○증인 이희동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왜 자리를 옮겨서…… 박건욱 검사는 이희동 검사 옆에 안 앉아 있었잖아요. 맞지요?

○증인 이희동 예.

○소위원장 김용민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보시지요. 발언대 나오십시오.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증인 이희동 발언대로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자리를 옮기셔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지금?

○증인 이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얘기 나눈 것 맞지요?

○증인 이희동 예.

○소위원장 김용민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증인 이희동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검사 생활 몇 년 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 이희동 22년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22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증인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 말이 틀렸다 그 말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이희동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사 세부 관계를……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무슨 얘기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겠지요. 하지만 두 분이 분명히 따로 앉으셨는데 자리를 옮겼고 옮겨서 두 분이 서로 얘기하면서 뭔가 말 맞춤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난 정황이고 드러난 사실입니다.

○증인 이희동 말을 맞추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앞으로의 진술, 앞으로의 증언들을 저희가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국민들 앞에서 공직자로서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훼손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두 분이 모여서 쪽덕쪽덕 얘기하시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냐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증인의 태도입니다?

○증인 이희동 제가 좀……

○소위원장 김용민 사과하십시오.

○증인 이희동 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깊었는데 증언을 맞추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위원장께 긴급하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반입 금지 조항이 있고요. 지금 그 근거로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라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답안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위로 하여금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준비한 답안 제출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경위에게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두 분 다 준비하셨어요?

○장경태 위원 본인이 메모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만약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정답을 맞춰서 두 분의 답안지가 일치하는 모범 답안이라면 사건에 사건 모의 정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바로 제출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경위를 통해서, 행정실을 통해서 회수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답변이 그 답안지와 일치한다면 두 분 다 위증에 사전 모의하신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회를 모독하신 국회 모독죄로 당연히 고발 처리할 겁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래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보십시오. 수사관 두 분은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 맞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 두 분은 뒤에 잠깐 앉아 계시는 사이에 두 분이 만나서 또 증언을 서로 협의하고 있고, 이게 검찰의 진짜 모습입니까?

○장경태 위원 제출한 답안지가 기사에 찍힌 답안지랑 일치하는지, Q&A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살아도 됩니까?

○장경태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위원장 김용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영교 위원 검사가 왜 그러시지, 검사가? 검사들이 왜 이러십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수사관 두 분, 이 자료 저희가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제출할 수 있겠어요?

○증인 김정민 예.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제출받겠습니다. 제출받고 속기록에 남겨 두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로, 제주항공 사고는 12월 29일 날 있었네요? 24년 12월 29일, 그렇지요?

○증인 조경식 칠팔월 경인데요, 제 기억으로요.

○서영교 위원 아, 칠팔월 경입니까?

○증인 조경식 예,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이서준 기자가 저한테 보내 준 '다 죽은 윤석열은 겁날 것 하나도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칠팔월? 올해 칠팔월?

○증인 조경식 아니요, 작년이요.

○서영교 위원 작년 칠팔월. 그러면 그 내용 한 번 더 저랑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남경민 수사관, 이것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증인 남경민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 본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누가 작성하셨어요?

○증인 남경민 함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누구랑?

○증인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사전 모의하신 거예요, 청문회 참석을?

○소위원장 김용민 사전에 모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장경태 위원 큰일 났네,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 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해도 진술을 입 맞춤합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아니, 두 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출석 요구할 때도 입 맞춤하고 가세요? 사전 모의했다고 진술하세요, 검찰 가셔서도?

답안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범 정답을 외워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커닝해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모의해서 두 자료가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도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 다 허위 진술로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답변을 기억해서 한 게 아니고 답안지…… 저희가 속기록 다 확인할 거예요, 비교 대조해서. 그런데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에 답변하셨다 그러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 맞춤한 거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오신 4명의 증인분들은 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재판도 하시고. 피의자가 이런 상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용납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지요. 아마 구속영장 쳤겠지요, 이 정도면 증거인멸……

○장경태 위원 작성인이 변호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을 득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어찌 됐건 보고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다시 한번 위증의 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가기 전에……

○장경태 위원 작성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장경태 위원 두 분이 직접 작성한 건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건지.

○소위원장 김용민 남경민 수사관,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정민 수사관도 직접 작성했어요?

○증인 김정민 예, 직접 썼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증인 남경민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일요일에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디서 하셨어요?

○증인 남경민 제 집에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정민 수사관은 어디서 했어요?

○증인 김정민 저희 집에서 해 가지고 선배님 집으로 갔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보내 줬어요? 보여 줬어요, 서로?

○증인 김정민 예,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단들이만 있었어요? 단들이만 있었습니까?

○증인 김정민 어디 말씀……

○장경태 위원 모범 답안, 두 분의 문서가 이모티콘까지 아주 일치하더라고요. 일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는데 두 분이서 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모범 답안 작성하실 때?

○증인 남경민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남편의 직업은 변호인입니까?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 보시고요. 이따 질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이렇게 답변 모범 답안 가지고 나와서 그것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이희동 차장님, 본 적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증인이 나와

서 답안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수사할 때도 항상 물어보지요. 사전에 연락한 적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조회, 휴대폰 앱수수색 다 하지요? 그래서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증인 이희동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어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지적은 더 하기로 하고요.

박은정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박은정 위원 계속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자료제출 부분 저희가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임의제출받긴 했지만 방금 받은 두 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하니 자료제출 요구해서 의결해서 받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 자료제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은정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6시24분)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께서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박은정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의 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관봉권 떠지 사건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수사관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도 자료제출요구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국회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6시25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르면 김기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김정민 수사관님, 아까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원래 세서 하느냐, 압수물 처리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관되게 ‘워낙 압수하는 사건 건수가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도 이미 준비된 답변 중의 하나였던가요?

○장경태 위원 답안지 Q&A에 있나는 걸 물어보잖아요.

○김기표 위원 이미 준비해 온 답변 중의 하나였던가요?

○증인 김정민 거기에 있긴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할 것으로 마음먹고 온 거군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하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확인이 된 셈인데 제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는 그때 질문이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항상 현금 들어오면 세니까 제가 세서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 셨으니까 떠지가 없어졌을 것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현금은 무조건 센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흘러가서 ‘그러면 그것도 셨겠구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아예 그 얘기를 안 할 작정으로 오셨던 건가요?

○증인 김정민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압수물 관리라는 것이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박장을 압수를 했다든지 그런 예 아니면 뇌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예도 없고 나중에 사후에 돈이 갔니 마니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금이 압수물로서 적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상정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현금도 아니고 관봉권으로 압수물이 들

어온 상황이면 그것을 ‘업무가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과 답변이 맞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증인 김정민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김기표 위원 남경민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남편 직업이 어떻게 되지요? 회사원인가요?

○증인 남경민 예.

○김기표 위원 검찰 직원은 아닌가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김기표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내지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과도 협의를 했나요?

○증인 남경민 조언은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지요?

○증인 남경민 예.

○김기표 위원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증인 남경민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남 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증인 남경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어떤 점이 억울하지요?

○서영교 위원 뭐가 억울하지요?

○김기표 위원 뭐가 억울해요?

○서영교 위원 억울한 걸 얘기하세요, 다.

○증인 남경민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장경태 위원 그런데 둘이 입을 왜 맞춰요?

○증인 남경민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경태 위원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김기표 위원 박건욱 검사님, 지금은 인권보호관으로 나가 계신 박건욱 부장……

○증인 박건욱 대구고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구고검 검사인가요?

○증인 박건욱 예.

○김기표 위원 박건욱 검사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장검사였지요?

○증인 박건욱 예.

○김기표 위원 띠지가 없어진 거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증인 박건욱 4월 하순경에 알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원래 압수일은 언제지요?

○증인 박건욱 2024년 12월 17일이 압수일입니다.

○김기표 위원 12월 17일 날 압수하고 알게 된 것은…… 하순에 알았는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됐지요?

○증인 박건욱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4월 23일 날 관봉권 사진을 처음으로 단독보도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JTBC에서?

○증인 박건욱 예, 그 무렵에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 폐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밑에 검사는 어떻게 확인이 됐지요? 없어진 거를 만약에 아무 그거 없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증인 박건욱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검사실은 1월 8~9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 1월 8~9일경에 알았다고 했다고요, 그 없어진 거를? 그런데 그때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던가요?

○증인 박건욱 예,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증인 박건욱 그 검사는 2월 초순에 인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이동 전까지 그냥 베티다가 인사이동돼서 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증인 박건욱 본인이 왜 안 했는지까지 제가 그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는데 당시 1월 8~9일경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진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점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네요?

○증인 박건욱 그래서 9일 날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1월 11일 만료이기 때문에 급하게 1월 11일 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혼란적인 상태여서 그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담당 검사가 제게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소를 준비하면서 없어진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말의 취지를?

○증인 박건욱 제가 듣기로는 관봉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압수계 쪽에 확인했더니 이미 분실하고 없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위에 보고는 전혀 안 하다가 4월 달쯤이나 지도부에서 알게 됐다 이런 주장인가요?

○증인 박건욱 그게 사실입니다.

○김기표 위원 김정민 수사관님, 이게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으면 12월 17일 날 바로 접수가 됐나요, 압수물로? 오늘 나오기 전에 그거 확인했겠지요?

○증인 김정민 12월 17일엔 제가 없었고 12월 18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바로 다음 날 접수된 걸로 나오던가요?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12월 18일 날 접수된 거 맞아요?

○증인 김정민 예.

○김기표 위원 물론 현금이니까 바로 접수될 수 있으나 보통 특수수사하는 데서 압수 물은 검사실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압수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박건욱 검사님, 어때요?

○증인 박건욱 그때 건진법사를 체포해 왔습니다. 체포해 오고 그때 압수물이 좀 여러 가지였는데 담당 검사실에서 바로 다음 날, 12월 18일 날 압수계에 압수물 수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경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관봉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압수영장 범죄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2022년 5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어떻게 진행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압수물 수리를 했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2022년에 나왔으면, 다른 사건 같으면 득달같이 별건 입건해 가지고 압수하고 추적하고 했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태평하네요?

○증인 박건욱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건진법사 주거지에서 건진법사를 체포하면서 압수했는데 그때 휴대폰 3개를 같이 압수했습니다. 휴대폰 3개에 대해서 급하게, 왜냐하면 휴대폰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문자를 발견하고 바로 그때 저희들이 탐색을 중단한 다음에 추가 인지해서 그걸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하고 그 사건을 진행하는 관계로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김기표 위원 그러면 보통 압수를 할 때는 증거물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사진도 다 찍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박건욱 예.

○김기표 위원 동영상도 다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증인 박건욱 제가 알기로는 압수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났던 이유도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났던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 관봉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진으로는 다 남아 있다는 얘긴가요?

○증인 박건욱 그 라벨지가 그대로 찍혀 있고 그게 JTBC에서……

○김기표 위원 아니, 곁의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거고 그 안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건욱 안에 것 그거는 관봉을 뜯어야지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뜯어져서 그 관봉 안에 볼 수 있는 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단 얘기가요?

○증인 박건욱 그것도 압수계 쪽에서 버렸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을 뜯고 어찌고 할 때…… 아니, 압수물이라는 게 굉장히 현장에서, 우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편셋으로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압수물도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뜯고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도 안 찍어 놓고 사진도 안 찍어 놓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이 그런데 그거에 의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인 박건욱 압수계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저희……

○**김기표 위원** 지금 검사실에서는 관봉 그대로 했는데 압수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김정민 수사관이 실수로 그거를 없앴다 이렇게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증인 박건욱** 프레임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거는 이제 수사에서 밝혀지겠지요. 김정민 수사관이 아까부터 진술하는 것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 일이겠어요. 평생에 한 번, 일반 국민들은 관봉권을 볼까 말까 하고 저도 한 번인가 제대로 봤습니다, 그전에 뭐 하면서.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못 보고 일반 수사관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압수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히 교육받는 검찰 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특수, 이런 큰 사건으로 수사해서 압수해 온 것을 아무 개념 없이 돈을 세서 떠지를 없애 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관봉권을 누가 셉니까? 관봉권은 다 액수 맞춰져서 나오는 건데 누가 그걸 다 떼서 세고 있습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관봉이 돼 있으면 5000만 원이고 500만 원인 거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일반 구권도 은행에서 도장 찍혀서 나오는 거 테두리 두르면 다 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인 거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걸 굳이 뜯어 가지고, 구권도 아니고 그걸 세기 위해서 관봉권도 없애고 떠지도 없앴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뇌물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관봉권이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추가로 수사해야 될 것은 그걸 떠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구권에 찍혀 있는 은행의 떠지 막도장 가지고도 그걸 추적해 내는 게 검찰의 수사 실력이었는데, 관봉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사단서가 되고 증거가 되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없애 버리고 이제 와서 ‘말단 수사관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지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고.

그것도 박건욱 검사 말에 의하더라도 1월 달에 발견이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4월 달에 또 보고가 되고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총체적인 난맥상 아닙니까, 그건 검찰의?

그러면 1월 달에 발견됐는데도 계속 쉬쉬하고 있었던 것은 그 자체적으로 박건욱 검사 말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없애 놓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과한 의심을 하고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박건욱** 말씀드리자면 건진법사를 체포해 온 다음에 휴대폰을 급하게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 다이아 목걸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바로 집중해서 인지해서 돌입을 했고……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결국 제가 예측했던 대로네요, ‘책임 소재 규정대로 처리했고 고의나 과실 없음’. 그래서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관봉권 물어보면 결국 ‘말단 직원이 실수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고의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 지금 준비해 놓은 대로 답변을 한 것이고 마치 현금은 처음부터 세는 것도 아닌 것

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세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거를 파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진술이나 오늘 전체적인 답변 태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조금 믿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정민**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책상 서랍에 지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증인 김정민** 청문회 안내 파일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작성한 자료는 아닌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지금 신청서랑 안내 파일만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조성은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조성은 대표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고발사주 총선개입 사건이지요.

○**참고인 조성은**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사건에 대한 공익 신고자로서 그동안 발언하고 목소리를 내 오셨는데 최근에는 대검의 그 검사를 징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발사주 피고인, 범죄자로 특정된 손준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판결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조성은**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는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손준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직접 지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고발사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사건은 국정원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고발을 사주한 사건으로 최근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런데 사실상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검찰에 고발해라 하고 검찰은 또 윤석열 고발 지시에 따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정원에 있는 특수정보(SI)첩보 및 보고서 원본 그다음에 사본 이런 것들을 국정원장이 삭제했다,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삭제했다 이것으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무고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소한 검찰은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무고한,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국정원에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를 했다, 삭제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지금 사람을 몇 년째, 그것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 신고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조성은 제가 21년 9월 2일 날 첫 보도로 고발사주 사건, 저는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당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9월 3일 날 공익 신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미 공익 신고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김웅 사건,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옆자리에 계신 오늘 출석하신 이희동, 그 당시 공공수사1부장께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직접 수사하셨던 그 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 짓을 하시나요?’라고 제가 여쭤고요. ‘저는 그 짓을 안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는 이 짓을 안 하시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니……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고발사주 당시에도,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윤석열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는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일 때였습니다. 옆에 계신 이희동 당시 부장검사와 제가 티타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습니다. 이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공직선거법상, 특히나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관할이 있으므로 부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한동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 여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절대 수사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회유의 발언도 있었고 제가 경험했던 지난 4년의 이 고발사주 수사와 어떤 공판과 그다음에 감찰과 여러 단계별로 검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 혹은 기소기관이 될 수 없고 범죄 조직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 조성은 대표께서 대검에 정계 요청한 검사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이희동 검사를 포함해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검사들이, 손준성·임홍석·성상욱 이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희동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포함해서 절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자신의 반대편,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정치검찰, 지금 조성은 대표는 ‘범죄검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은 자신들은 이제는 수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보완수사권이라도 달라……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착한 검찰이 돼서…… 보완수사를 달라, 수사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조성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공익 신고자로 드러나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를 당해서 저도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까지도 어떤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변호인이 없이 제가 모든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녹음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공개를 하게 됐느냐면 7시간 37분이라는, 당시 공범 김웅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박은정 위원 김웅도 검사 출신이지요?

○참고인 조성은 그렇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으로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그 과정에서 제가 7시간 37분을 녹음했던 것을 검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해외 출장 일정을 미리 고지하고 조사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출국했던 당일 날 김웅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조성은이 전부 진술 번복을 해서 우리가 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 김웅을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법조 기자들을, 지금은 사표를 냈습니다만 박기동 검사의 차장실에 기자들을 다 불러 놓고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자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참 우스운 일이지요. 차장검사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즉시 저는 맨해튼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박기동이 이런 소리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즉시 공수처 담당 수사검사에게 ‘진술 번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해당 조사 내용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그렇게 되니 공수처는 다행히 그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웅은 손준성과 공범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수사를 잘한다 혹은 보완수사나 수사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공익 신고는 중요 증인 아닙니까. 중요 증인의 모든 진술 취지와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번복해서 허위로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대검찰청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 공공1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 내용들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했느냐면 당시 검사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주세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조사한 것은 제 방이 더러워서 거기서 조사한 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주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니 그 검사가 ‘하……’ 이렇게 하면서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하니까 그때 검사님 반응이 ‘저는 조성은 씨에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정정할 게 있는데 김웅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참고인 조성은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 뒤에 앉아 있는 이희동 검사가 김웅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참고인 조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불기소이유서 작성도 저의 진술을 전부 거의 정반대로 기재를 해서 허위 처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고발사주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를 마구 인멸하고 그리고 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싶은 김웅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내용도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은 대표를 조사한 내용도 분명히 조사를 해 놓고도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그것을 감추고 은닉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마음대로 하는, 했다가 안 했다가, 그 결론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민생 범죄를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참고인 조성은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조성은 대표가 지금 경험한 고발사주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그리고 마침내 지금 윤석열, 이 고발사주의 수괴가 완전히 나타났어요. 손준성 고발사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 고발사주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려면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사들이 범죄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적으로 기소하고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해야 된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일 뿐인데 여기 와서 숟가락을 얹어 가지고 뭐는 빼 주고 뭐는 지켜야 되고, 이런 망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조성은 제가 확인하고…… 저는 사실 지금 피해의 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고발사주 사건은 10년 뒤라도 밝혀질 것이다’라고 수사검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첫 공익 신고했던 진술 내용 공개 신청을 하니 부존재를 이유로 받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부존재냐, 증거인멸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감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권을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표적 수사하고 허위 기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마지막 대질신문을 했었는데 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녹음된 대질신문의 기록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해당 수사검사는 거의 일본대사관으로 피신하다시피 됐고요, 이번 8월 21일 자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은 이겁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본 것을 아무도 입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사화가 됐느냐? 손준성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남부지검, 지금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분명히 공판에 나가야 되는데 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가 단독으로 ‘고발사주 조성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손준성의 재판 내도록 문서 위조범이다라고 하면서 공익 신고 내용이 허위다.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고발사주 사건도 있지만 제가 무슨 국정원 요원이라는 등 별별 허위의 공격을 다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정말 수많은 검사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던 것은 제가 부득이하게 검사 범죄를 관찰하고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단 한 명도 부끄러워하거나 단 한 명도 좀 어색해하거나 이게 죄가 된다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들켜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도에 있었던 내용들은, 현재까지 마주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그 태도에 대해서 수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제가 타인의 어떤 죄를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조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심지어 대질신문했던 녹음 파일까지 삭제를 해 가면서 허위 기소를 할지는 몰랐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는 내란까지 개입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가진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70년 역사의 검찰이 왜 지금 해체를 해야 하는가, 진짜 정말 제가 조금 날 선 표현이지만 스스로 쪽팔린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조성은 참고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 질의시간이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손을 끊)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 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건 좋은데 오늘 이 자리는 토론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위하여나 자기변명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한 발언권은 굳이 주지 않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답을 하시고 정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을 하거나 못다 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드릴 테니 그것을 봐서, 중간에 이렇게 막 끼어드시면서 질문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예. 위원장님께 손만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이희동 차장께서 관봉 띠 사건 관련해서요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했다. 그래서 목걸이, 샤텔백 이런 것도 확인해 냈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 가고 있었다. 건진이나 김건희를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참고인 조성은 예.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조성은 대표께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성은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희동 검사와 조사를 받고 면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고인 조성은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동 검사가 조성은 참고인에게 ‘정치 계속하셔야지요. 한동훈은 절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뉴파티 하셨지요?’ 그리고 계속 ‘아까워서 그러지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와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짧게 말씀 주십시오.

○참고인 조성은 예, 모두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당시에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공수사1부의 소속 검사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떴던 기사 제목이 ‘특수통 친윤 검사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 이렇게 뜬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굉장히 친윤 검사시구나’라고, ‘부장검사가 친윤 검사라는 기사까지 뜨다니 대단히 친윤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조사될지가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정해서 갔더니 갑자기, 저는 그전에 여러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부장검사께서 저에게 티타임을 하자는 제안은 사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너 굉장히 대접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받자고 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 계속 여쭈시더라고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 계속 여쭈셔서 제가 ‘어디까지 수사하실 거냐’라고 여쭤어요. 왜 그러냐면 김웅 사건만 수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결국 선거범죄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전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전부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 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뭐를 수사를’ 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수처 평계를 대셨어요. 그랬던 내용이었고.

제가 계속 수사 의지를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뉴파티 하셨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파티라는 것은 당시 혀위기사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나쁜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으신 것이지요. ‘뉴파티 하셨지요?’, 뜯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모두 적법하게 다 처리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지요?’라고 하니까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정치 계속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법원까지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그 전까지 정당인을 했었으나 어떤 정당에 있으면 이 사건에 오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아까워서 그러지요. 정치 계속하셔야지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뉴파티라는 것을 협박조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정치 계속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굉장히 회유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선량했다면, 선량한 격려의 의지였다면 그 이후에 제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불기소처분서에 조성은이 전부 진술을 번복해서, 김웅을 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 조성은이 말을 다 바꿔서 기소를 못 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정치할 거면 여기서 멈춰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조성은** 그 취지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희동 차장, 방금 얘기 들으셨지요?

○**증인 이희동** 예.

○**소위원장 김용민** 저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희동** 일단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 제 질문은 일단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답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게요.

○**증인 이희동** 조성은 씨가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제가 티타임을 한 것은 맞고 거기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체 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성은 씨가 정치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하셨다면 중요 참고인으로 티타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계속하셔야지’ 하는 덕담 정도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위원장 김용민** 뉴파티는 뭐니까? 뉴파티는 뭐예요?

○**증인 이희동**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뭐 정당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뉴파티가……

○**증인 이희동**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런 덕담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성은 대표, 뉴파티가 뭐예요?

○**참고인 조성은** 뉴파티는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코로나 당시에 창당을 하다가 철회를 했던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그 내용들이 무슨 당원 명부를 어떻게 저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소위 말해 그때 당시에 정당 비슷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안 좋은 기사가 났던……

○**참고인 조성은**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말씀이니까 현직 검사가 ‘뉴파티 했지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었겠네요?

○**참고인 조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는 정치를 한다 만다, 이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를 들어 보시면 그냥 뜬금없어요. 제가 계속 수사 어디까지 할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뉴파티 했지요? 정치 계속하셔야지요’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억은 잘못됐고.

하나 더 알려 드리면, 지난주가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촬영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은폐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고요. 뉴파티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차장검사 하실 때 그 수사랑 공판 지휘를 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자한테도 그 관련 기사를 보내면서 조성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하신 것은 아마 위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희동 차장검사, ‘한동훈 장관은 수사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희동** 일단 그런 것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증인 이희동** 예,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원장 김용민**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증인 이희동**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 출석요구서에는 전성배 사건 수사 지휘 관련해서, 신문 요지로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그리고 ‘브랜드뉴파티’가 아까 제가 ‘정당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뉴파티 앞에, 브랜드?

○**증인 이희동** 아까 위원장님이…… 아까 조성은 참고인이 ‘브랜드뉴파티’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정확히는 ‘브랜드뉴파티’가 맞습니까?

○**참고인 조성은**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기억 안 나신다더니 저도 모르는 ‘브랜드뉴파티’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여지껏 ‘뉴파티’만 얘기했는데 새로운 단어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기억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이희동** 아까 제가 잘 말씀 못 드렸고 참고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조성은 대표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필성 변호사님.

○**참고인 김필성** 예.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럼요. 두 분 참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희동 차장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은 회유·협박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이 당시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기소가 됐고 기소된 이후에 또 검사장까지 승진했었지요.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고 고발사주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는 내용들, 거기에 특히 김건희는 추가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구누구누구가 추가조작을 했다

고 거짓말을 하더라, 허위사실유포다, 명예훼손을 했다, 이것이 고발사주 고발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검찰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고발을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총선 무렵에 이루어진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범죄고 매우 잘못된 것은 맞지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수사권·기소권 같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필성 지금 고발사주보다 사실 제가 오늘 관봉권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을 예로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관봉권 사건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에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서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지요?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장경태 위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것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든 아니면 이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지요.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검찰이 무서운 것이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성은 대표라고 하셨지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율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겨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것은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천기누설을 하셨습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 밖에만 안 나면 될 것 같다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 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마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PPT 잠깐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은…… 검찰이 언론에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공직 인물들에 대한 사건들만 망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삶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광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압수 수색영장을 누락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불기소를 해 버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지요.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의 지휘를 받고 또 검사들이 나중에 보완수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짹 무시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전관 변호사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업 사주 혹은 대표이사와 밤에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봐주기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또 있습니다.

현대제철 사건이 하나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받았다고 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는 불법파견 맞다라고 근로감독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에요. 검사가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검사가 수사하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필성 검찰개혁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생 문제가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 주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겪어 볼 만한 경험을 해 본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제가 재심 사건도 여러 번 해 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사건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를 겪어 본 사람들은 이게 민생 문제라는 걸 모두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입맛대로 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일들 때문에 검찰 쪽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생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연결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검찰 쪽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별사법경찰관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생 범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로 드신 이런 내용들은 그런 민생 문제와 직결된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이런 영역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주목받지 않은 영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관의 영역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쳤으니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도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시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정회시간에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지 마시라는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각자 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신문 순서입니다.

재보충 신문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양승봉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이게 좀 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김기표 위원 그때 당시에 어디 어떻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를 하셨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상태에서 변호인단으로 모집을 하시길래 참여를 하게 돼서……

○김기표 위원 변호인단이셨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참고인 양승봉 유우성 씨가 서울시……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양승봉 탈북자 출신의 유우성 씨가 서울시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남한의

탈북자 정보를 3회에 걸쳐서 북한에 전달하는 등 9개의 간첩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결국 간첩죄로 기소가 됐지요, 유우성 씨가?

○**참고인 양승봉** 예, 기소가 됐는데, 무려 9개나 기소가 됐었는데 그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었고요. 항소심 과정에서도 무죄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나 거기서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유우성 씨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외국환거래법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복 기소를 인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줄기지요. 하나는 국정원과 검찰이 합세해서, ‘합세해서’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 합세해서 구체적으로 간첩 사건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고.

그런데 중국 관련 무슨 서류였지요, 그게?

○**참고인 양승봉** 출입국기록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출입국기록이었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김기표 위원** 그 증거를 조작해서 결국 기소에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사건이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른바 보복 기소라고 하는 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복 기소였다는 거지요?

○**참고인 양승봉** 2014년 2월 달에 중국에서 회신이 왔어요. ‘검찰 측 제출의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 회신이 와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이라든지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탈북자단체에서 유우성 씨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두 개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이 되자마자, 그 사건은 원래 검찰이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각하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그냥 수사관 세 명, 네 명 동원하고 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조사를 해 버리더라고요.

○**김기표 위원** 잠깐만요. 그 사건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이 고발이 또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탈북자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탈북자단체를, 그러면 그것도 이른바 고발사주 형태였던가요? 확증은 없으나 혹시 그렇게 했다고 짐작하시나요?

○**참고인 양승봉** 고발이 너무 웃기는 게 신문 기사 두 장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김기표 위원** 탈북자단체에서?

○**참고인 양승봉** 예.

○**김기표 위원** 혹시나 그것이 검찰하고 물밀 교류가 있었다고 의심은 하시나요?

○**참고인 양승봉** 저희들 의심하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김기표 위원** 객관적 증거는 없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양승봉 변호사님은 검찰과 뭔가 좀 사전에 교감이 있게 고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당사자들은 하고 있지요?

○참고인 양승봉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촉발이 돼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됐고 사실 처벌조차 하지 않았던 게 다시 수사가 됐다는 건가요?

○참고인 양승봉 2010년에 불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조작이 밝혀지니까 4월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례적이지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그냥 제기하기 어려우니까 어찌 됐든 고발이 들어온 것을 평계 삼아서 다시 제기, 수사했다 이렇게 보여진 사건인가요?

○참고인 양승봉 그런 고발장 자체를 원래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까지 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하고 검사들 여러 명이 동원돼 가지고 아주 그냥 밀도 높게 하더라고요.

○김기표 위원 검사들이 어디로 파견됐다는 거지요?

○참고인 양승봉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이……

○김기표 위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몇 명이나 수사를 했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두세 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김기표 위원 집중적으로. 보통은 그런 고발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보더라도 언론기사 정도 두어 개 붙여서 한 고발장이니까 보통 각하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했다는 건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그렇습니다. 경찰한테 보내거나, 아무튼 조사 자체를 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검사가 직접 제기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했다는 거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얼마 동안 수사를 했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이삼 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가 항소심, 국가보안법 아까 말씀드린 9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후달렸어요, 막말로. 그 변론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뜯금없이 그런 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김기표 위원 그때는 아직 무죄 선고가 나기 전이었다는 건가요?

○참고인 양승봉 항소심 무죄가……

○김기표 위원 항소심 무죄가 나기 전,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른바 핀치에 몰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건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그때 비난 많이 받았었거든요.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추가 이른바 보복 수사라고 했던 것은?

○참고인 양승봉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배심원들 다수가 보복 기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걸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법원에 가서 비로소 보복 목적의 기소だ라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공소기각.

○참고인 양승봉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게 확정이 됐고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된 게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요?

○참고인 양승봉 보복 기소 처음입니다.

○김기표 위원 보복 기소로 공소기각된 것은?

○참고인 양승봉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김기표 위원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소회랄까요, 양 변호사님이 느끼는 바가 어떤 거지요?

○참고인 양승봉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정말로 훌륭한 게 검사들도 잘 한 거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검사들이 그 당시에 이미 수사권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었으면 이런 유의 사건이 아예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사의 방향성·지향성이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지향성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고 보복 목적으로 아주 염치없는 짓거리를 그때 했었어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양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무리한 기소에 무리한 보복 수사가 된 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개시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검찰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참고인 양승봉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굉장히 지금 지나고 보면 터무니없는 게 북한 지역에 있는 연선이라 해야 되나요, 북한 경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중국 기지국을 이용해서 전화가 됩니다. 지금도 탈북자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그 간첩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여동생이 밤에, 새벽에 두만강을 막 넘어 다니면서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도 사진 찍어 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 버릴 수 있는데……

○김기표 위원 전송이 되는데.

○참고인 양승봉 그걸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두만강을 왔다 갔다하면서 간첩죄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검사가 수사권을 견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지위였다면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이런 수사가. 그때 이미 견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검사도 보충수사를 하면서 계속 여동생을 조사해 가지고 유죄로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유우성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이 안 되는 거지요,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상이 있으신가요?

○참고인 양승봉 검찰이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 보호, 객관의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항상 수사권을 갖는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은 검사가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수사권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를 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양승봉** 그러니까 경찰도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수사권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보완수사권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드시 잔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방향의 적절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게 기소를 담당하는 역할이지요, 결국은.

○**김기표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요새 검찰개혁안이나 이런 것과 약간 다른 방향이긴 한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통제’라고 표현했나요?

○**참고인 양승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완수사권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인데 보완수사권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표 위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인 양승봉** 예,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요구권 자체로 충분히, 그것은 ‘견제’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제가 그 표현을 쓴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양승봉**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뛰어 보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그건 예측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표 위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권한이 좀 집중된 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점에 지금 개혁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당연히 인정하시는 거고, 특히 유우성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하는, 지금 방향과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경찰 문제를 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양승봉** 충분한지 그것은 솔직히 장담 못 드리겠지만……

○**김기표 위원** 또 논의해 봐야 된다는 취지신가요?

○**참고인 양승봉** 예,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수사관 두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의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

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메모는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ㅂㅅ’의 의미는 뭐예요?

○증인 김정민 ……

○장경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①기억 1000건! ②폐기 나 몰라! ③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지요? 자필 맞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남경민 수사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증인 남경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누가 접수받았지요?

○증인 남경민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12월 18일 날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지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돼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그런데 왜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최선영 계장이 접수 취소해 달라고 한 거지요?

○증인 남경민 아니요, 다른 계장님입니다.

○장경태 위원 다른 계장님인가요? 누구, 어떤 계장님으시지요?

○증인 남경민 이름을 말씀드려도……

○장경태 위원 예,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증인 남경민 이주연 계장님입니다.

○장경태 위원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증인 남경민 이주연입니다.

○장경태 위원 이주영 계장님?

○증인 남경민 이주연입니다.

○장경태 위원 이주연 계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않지요?

○증인 남경민 자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 현금 계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남경민 수사관은?

○증인 남경민 계수는 수사……

○장경태 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계수기를 빌려 달라 하여 내어 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남경민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계장님……

○장경태 위원 이거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하여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남경민 (고개를 끄덕임)

○장경태 위원 이거 지금 결정적 수사 증거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그런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인, 이주연 계장님인 계수기를 빌려 달라 하여 내어 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지요?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 놨어요. 제가 앞뒤 다 분석해서……

○증인 남경민 그거는 후배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장님인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지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계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련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 드린 거예요, 이제 세시라고? 그건 아니에요?

○증인 남경민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계수기에 세는 건 못 봤어요?

○증인 남경민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업무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때 관봉권 팩을 막 떼시던가요, 비닐 팩을?

○증인 남경민 보지 못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건 못 봤고요.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해당 이주연 계장이 아마 관봉권 비닐 팩 떼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훼손했던.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김정민 수사관님,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몇 시에 만나서……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지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세 분이 있으셨어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증인 남경민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김정민 수사관?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하셨어요. 1. 띠지 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보존, 6. 계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계수에 다 잘 써 놓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려 가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증인 김정민 언제 말씀하시는 거……

○장경태 위원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화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김정민 아,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장경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요.

○증인 김정민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요?

‘메모 2. 하루에 압수 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에 금액과 계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증인 남경민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장경태 위원 검사예요, 남편이?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증인 남경민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장경태 위원 남편도 수사받으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들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증인 남경민 1시에 만나서 5시쯤 헤어졌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5개를 남편분이 적어 주시고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증인 남경민 제삼자 입장……

○장경태 위원 남편 폰까지 다 하면, 이거 통신사실확인조회해야겠네요.

○증인 남경민 제삼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 준 겁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남편이 조언해 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증인 남경민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이 본인들 두 분과 남편분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고요.

전 이거 다 조사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관여하였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지요?

‘4350’ 이 번호는,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증인 남경민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지요,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기는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위증 안 하셨으면 해서.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1월 9일에 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굽니까?

○증인 남경민 최재현 검사님이……

○장경태 위원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보존 지시를 했는데 다시 1월 9일 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9일 날?

○증인 남경민 관봉권 추적하신다고 영치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 보셨는데 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 9일 날 최재현……

○증인 남경민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최재현 검사가 와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증인 남경민 그 매뉴얼과 규칙은 다릅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 최재현 검사는 그 떠지와 관봉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부장님,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증인 박건욱 못 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최재현 검사 단독범행이네요, 이건? 그 조사팀인가?

○증인 박건욱 그걸 ‘범행’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의하지……

○장경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재현 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떠지를 없앴든지 아니면 이주연 계장이 가지고 가서 계수기 돌리면서 떠지를 훼손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심지어 부장검사에게 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걸 4월에서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4일 날 인지하셨고 4월 25일 날 보고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재현 검사가 인지한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러면 그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당연히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까?

○증인 박건욱 2월 초에 인사로 다른 청으로 갔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아셨는데 한 달 내내 부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평검사가? 아니, 1월 9일 날 떠지 없어졌느냐고 남경민 수사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자기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관봉권의 떠지와 스티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여기 다 일관되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렇게 떠지와 스티커가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다시 분석은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뒤도 논리가 안 맞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현 검사는 1월 9일 날 안 겁니다. 최재현 검사 저희가 증인 출석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장검사님은 정확히 4월 25일 날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 9일 날 발견했던 검사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증인 박건욱 4월 23일 날 JTBC에서 관봉권 사진을 보도할 그 무렵 알게 됐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았던 최재현 검사가 박건욱 부장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희동 차장검사님도 4월 25일 돼서 보고받으신 거지요? 1월 9일 이후부터 4월 24일 사이에는 전혀 이 사실관계를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지요?

○증인 이희동 예, 24일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압수계 수사관들을 그렇게 질책했던 검사는 이 사건을 세 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최재현 검사는 아주 주요 사건의 혐의자로, 최선영 계장과 이주연 계장 모두 다음 청문회 때 빚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저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지요.

○증인 이희동 한 말씀만……

○소위원장 김용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희동 예, 짧게……

아까 거기 자료에 보면 최재현 검사가 이게 왜 없어졌느냐고 하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수사팀에서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장경태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셨어요, 이 자료를? 배포 저희가 안 해 드렸는데.

○증인 이희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지금하신 거지 이 자료 보신 건 아니지요?

○증인 이희동 절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민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4.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언급할 계획임'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문건 같은데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고 문건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보고 문건 같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고 문건 아니에요?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물사무규칙 4조에 따라서 현금 계수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압수 목록에 뭐라고 기재돼 있는지가 기억나세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뭐라고 기재돼 있어요?

○증인 남경민 '현금(5만 원권 3300매) (전성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백해룡 화곡지구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압수수색 목록을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받으면 다 드러납니다.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아까 지구대장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럼요.

○소위원장 김용민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백해룡 압수 장소가 전성배 씨 주거지인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주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은신처라고 합니다.

○참고인 백해룡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 원권을 계수기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지요?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반드시 계수를 하지요. 그런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한 겁니다.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지요.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 관련해 가지고, 압수 관련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지요.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관봉 비닐로 싸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

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손 치더라도 지문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보면 제3조(주의의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타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금이면 얼마인지 세어 봐야겠지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관봉 띠로 묶고 비닐로 쌈 그것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었는지 1만 원짜리가 들었는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훼손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훼손을 시킨 다음에 얼마 들었는지 그때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계수기 돌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냐들아’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증인 김정민 제가 썼습니다.

○서영교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저것은?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ㅂㅅ’이야?

○증인 김정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서영교 위원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해 대고 있어.

김정민!

○증인 김정민 예.

○서영교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냐들아’, 그러면 관봉의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냐들아’.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쓴 글에 다 들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폐기한 거지요?

○증인 김정민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써 놨어요. 위증에 위증에 가중처

별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요? 폐기를 물으면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돈을 세는 동안 지문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갑 끼고 셨다고 대답할 거지요? 이 자료에 써 있습니다.

띄워 줄 수 있습니까?

저게 김정민이 지금 들고 있는 답안지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도 ‘장갑을 낀 채로 계수’.

○증인 김정민 저건 다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서영교 위원 이 사람아.

○증인 김정민 아니, 저것은 계수를 물어보셔서……

○서영교 위원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 ‘장갑을 낀 채로 계수한다. 그래서 지문 감식이 아니다’라고 답하겠다고 써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답안지와 문건에 자신을 읊어낼 수 있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위증하고자 하고 전체 수사를 흐리고자 하고 저 돈이 윤석열·김건희에게서 나온 돈인지 국정원이 김건희에게 갖다준 1억 6000만 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을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수사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 주면서…… 남경민 수사관, 억울하면 억울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데 여기 와서까지 위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사 두 분 그리고 다른 검사들, 이것을 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오게 했는지 대한민국의 검사 두 사람에게 묻고,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용민 또 자리를 바꾸셔야 되지요, 증인분들?

○서영교 위원 예,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어제 썼다고 김정민 이야기하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그 전에 누구를 바꿀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서영교 위원 우선 김광민 변호사하고 허재현 기자, 두 검사분하고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두 분 검사님은 자리를 떨어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렇게 다 자기가 써 놓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시작하십시오, 질의.

○서영교 위원 조경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기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러내게 되어서.

쌍방울이 북한과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지요?

○증인 조경식 제일 처음에는 백두산 카지노 관광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관광특구를 신의주 그쪽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 관광호텔을 짓기로 한 거

지요. 그다음에 2차가 광물 쪽이고요. 3차가 핸드폰, 통신 관계였는데 통신은 통일교에 40년 전에 계약을 해 줘 갖고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북한 측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협의 이것을 검찰과 시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지금 이게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화영 정보 주고 권성동 통해 검찰과 협의하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증인 조경식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 니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서영교 위원 쌍방울과 이화영 둘을 끼워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증인 조경식 예, 그것이 쌍방울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서영교 위원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쌍방울을 살려 줄 수 있다?

○증인 조경식 예, 그래야 그 윗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증인 조경식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조경식 권 자 성 자 동 자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그날 만난 날 권성동 의원한테 돈 주는 장면의 사진이 있습니까?

○증인 조경식 그것은 없고 저한테 보낸, 권 박사 혼자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걸 찍은 사진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도 질타를 당했고요.

○서영교 위원 질타를 당했다는 건 누구에게 질타를 당합니까?

○증인 조경식 저한테 질타를 당했지요, 사진을 왜 권 박사 혼자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걸 찍었냐.

○서영교 위원 돈을 주는 장면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조경식 죄송합니다. 지금 권 박사한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저 역시 무고죄로 고소를 해 놔서……

○서영교 위원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조경식 맞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영교 위원 예.

○증인 조경식 저희 KH그룹 강원도 평창에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7홀이 회원제고 18홀이 700CC라고 해서 퍼블릭 코스 골프장인데 그 45홀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1년에 한 190억의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쌍방울 관계가 다시 드러나고 저희 KH 관계가 드러나고.

○서영교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조경식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조경식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KH그룹의 배상윤 회장도 들어오시게 되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은 형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증인 조경식 예.

○서영교 위원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

○증인 조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입니다, 권 박사한테.

○서영교 위원 본인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증인 조경식 예, 그것은 저하고 롯데호텔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대화 나눈 내용을.

○증인 조경식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배상윤 회장님께서 두 번을, 그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박사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 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서로 저것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이나 잘챙기고 있어. 모든 건 조 회장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할 테니까’라고 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배상윤 회장이 공항에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 이름을 거론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임·횡령이 한 3000억이 있는데 작년에 하얏트 호텔을 팔아 가지고 6월 말일 날 5000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횡령 금액이…… 이제 그것도 곧 마무리 지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뺏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 줄게, 그것만’ 거기까지 얘기가 그날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증인 조경식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증인 조경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증인 조경식 이 자재자명 자입니다. 이화영, 두분의 이름입니다.

○서영교 위원 질의는 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저 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마저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지금,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지요?

○증인 조경식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JTBC 기자도 저희가 체크는 해 봤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때는 12월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던 그즈음이더라고요.

○증인 조경식 예, 그전에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군요.

○증인 조경식 예, 그전에 대화했던 게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허재현 기자께서 그동안 보도하신 것을 쭉 보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렇다면 이화영·이재명, 두 정치인의 이름을 염으로 했던 것 저희는 그동안 추적했습니다. 국정원 자료까지 저희가 다 받아 보았습니다, 왜냐면 국정원 자료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다 보도되었고 그때 보도했던 분 중에 또 취재한 분 중에 한 분이 허재현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검찰이 정권과 그리고 국정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상황까지 왔는지,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가 국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아니 은폐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허재현 지금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의 로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취재기자로서의 판단인데요. 아까 전에 틀어 주신 녹취록에도 염연히 권성동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과 어떠어떤식의 얘기를 한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그 화면에도 등장하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 소스를 이야기해야 권과 접촉하는 황 땅땡이 명분이 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아까 보여 주신 것 있는데 그 황 땅땡 씨가 바로 권성동 의원과 매우 밀접한 사이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황 땅땡 씨의 실명을 사실 거론을 안 했었는데 아까 전에 이미 공개를 하셨거든요, 부회장님께서. 황성일 씨인데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권성동 의원이 주로 영향력을 뺏치는 강원도 영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지역 유지도 알고 있고 또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보수 법무법인의 고문 역할을 맡으신 적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사법 브로커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로 사실 언론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본인이 설명하지는, 당연히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통일교에서 한학자 씨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뭔가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혼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통일교에서 거론되는 금액보다 수십 배의 금액이 지금 조경식 부회장의 입에

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 한 것들을 조경식 부회장이 주장을 했는데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검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게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조경식 부회장께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은 조경식 부회장이 갖고 계셨던 휴대폰의 녹취록, 문자 등등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을 매개체로 해서 이재명, 이화영을 넘겨주는 대가로 김성태의 쌍방울 그리고 KH그룹으로 수사 확대가 더 되지 않도록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 방식으로 검찰에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면서 김정민 증인, 한 번만 물어볼게요.

남경민 수사관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정민 마곡동 쪽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마곡동에?

○증인 김정민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증인 김정민 예, 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가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가 의논해서 만났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남경민 수사관이 오라고 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예,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면서 왜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지요?

○증인 남경민 제 생각에 후배도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증인 남경민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아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증인 원위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규칙 얘기하면서 ‘계수기로 샌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아까 이희동 차장검사도 검사 생활 22년 하셨다는데 ‘관봉권 띠지가 훼손된 것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관봉권 관련해서 여기 메모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김정민 수사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거네요, 띠지를 보관하라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시가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서울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에 대한 수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봉권의 띠지라는 것은 뇌물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관봉권은 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떠지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떠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위에서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수사검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김정민 수사관의 얘기, 지금 준비된 답변이 과연 수사 단계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져야 될 검사, 책임을 져야 될 검찰 지휘부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이것은 중대한 비위거든요, 증거인멸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지휘·감독하는 검사 그다음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만일에 이 관봉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로 원형을 보존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면 그것 자체가 서울남부지검 신웅석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의 검찰 간부들, 수사팀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봉권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부지검의 수사 은폐, 범죄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로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말단 수사관,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수사관들이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고 여기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을 받고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혼자서 이것 폐기한 것으로 지금 혼자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왜 이것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압수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봉권이 밀봉이 되어 있었고 비닐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봉권 관련해서 서울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남부지검의 친윤 신웅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남부지검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 과정 프로세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황문규 교수님, 떠지 수사 이것을 검찰이 저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말단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감은 뭐냐하면 검찰이,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황문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들, 지금은 공수처의 검사도 있겠지만 검찰청의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고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그

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걸 보시면 검경의 수사 과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검의 통계입니다. 이 보완수사요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검찰은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보완수사를 검사들이 많이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지금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같아졌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선에 있었을 때도 거의 그랬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황문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보완수사를 해야지 추가적인, 경찰에서 못 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사 우월적 시각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거랑 경찰에게—앞으로는 중수청도 있을 텐데—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얻는 결과는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차이냐 하면 경찰을 통해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받는 그 결과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볼 것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는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참고인 황문규 그런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진짜 순수하게 했는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무도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지만 통제를 받자고 하는 건데, 경찰 등 앞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를 받는데 검찰의 수사 그게 직접수사든 보완수사든 아무런 통제를 안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것 이지요.

○박은정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 보완수사를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 수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신뢰성에 대해서 더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약속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 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

사만 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 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정의로운 수사, 잘하는 수사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불송치하는 사건……

화면 다시 올려 주세요.

불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 우리만이 불송치에 대해서 경찰이 암장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불기소하려고 하는 경찰의 나쁜 의도를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 불송치 중에서 검사가 90일 동안 서류를 검토해서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은 대검 통계로 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6% 중에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받는 것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비율이 낮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굉장히 비율이 낮아서 불송치 건수 중 송치 요구를 하는 건수는 그중에서 0.03%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 불송치 사건마저도 우리가 모두 봐야 돼’, 지금 현행으로도 검사들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시정하고 다시 해 달라. 재수사해라’ 그래서 다시 기소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다, 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저 비율 자체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건들이 있다면 그 유의미한 사건들을 경찰 단계에서 얼마나 더 역량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을 전부 송치받아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참고인 황문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조금 전의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되게 적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 한 77만 건이 송치되고 그중에서 10% 안 되는 건수가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불송치가 한 54만 건인데 재수사 요청 건이 1만 5000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전건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54만 건 중에서 1만 5000건 빼면 약 50만 건이지 않습니까? 50만 건의 피의자들은 사실 불송치되고 나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피의자의 지위에서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160만 건에 대해서 과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기존에 전건 송치했을 때.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송치된 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 건수랑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비율만 수사지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불송치되는 것에 대해서 90일 동안 꼼꼼히 봐서 재수사 요청을 할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전건 송치해서 보완수사를 다시 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과 같이 사라진 마당에,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구속을 풀어야 된다.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구속 사건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을 하는 검사가 충분히 기록을 보고 또 법원의 판사가 영장 기록을 보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법통제,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통제, 법원의 사법통제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고 만일에 그런 사건이 1년에 단 1건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A, B, C, D, E, F, G, 많은 구속 범죄사실 중에서 일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중에 그 사건, 그러니까 A, B, C, D 중에 A가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A만 사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나머지 B부터 F까지는 기소를 하고 A만 남겨 놓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A만 사건을 분리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구속 사건의 경우에 보완수사를 검사가 해야만 구속을 풀지 않고 사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감하십니까?

○**참고인 황문규** 예, 공감합니다.

저는 구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은 역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타깃으로 한 부분을 털겠다, 먼저 털기 하듯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수사하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저는 안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석방해야지 그건 구속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은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완수사를 계속해 가지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완수사를 해야 될 사건을 구속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은 석방을 시키고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보고 법원의 판사가 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럴 사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검사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사건은 거의 없는데 구속 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이 잘못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필성 변호사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 시스템이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관은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검사와 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제대로 해결해 내는가 이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경찰, 검사와 아마 중수청의 수사관이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인가 이것의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필성 사실 이건 절차법적 문제라서 지금 현재 제도개혁 논의할 때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을 보면, 상위 법령의 백몇 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옛날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바뀌면서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구체적인 수사지휘든 구체적인 협력관계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법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돼서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규정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사실 수사·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게 문재인 정권 후반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거기에 대한 준칙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규정 미비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에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될 준칙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도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법 단계에서 치밀하게 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수사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번에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규정이 되고 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규정이 된다면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23년 검사를 하는 동안 경찰과의 사이, 경찰과 수사 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검사들이 경찰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으르렁거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 일부 경찰들의 얘기고 일선에서는 검사들이 영장 단계에서도 그렇고 보완수사요구 단계에서도 그렇고 협력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당시에 지금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굉장히 고위급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서울시경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검사들이 협력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무엇을 수사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수사해서 마침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 시점이, 새벽 한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었거든요. 그때 여조부 검사들이 전부 다 좋아했어요, 새벽 3시에 모두가. 경찰관은 법원에 가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는 그 앞에 가 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부장검사한테 알려 주고 부장검사가 검사들하고 기뻐하고, 이런 수사 협력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실제로 검찰에서 검사와 경찰들 간에 이런 식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에 대해 통제를 함과 더불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검사가 70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과 결합해서 윤석열 검찰정권을 만들어 낸 이 폐해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필성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수사 실무에서는 그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문제되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거의 수사를 했고요, 검사가 별도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이 맞아야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합이 맞지 않아야 될 때, 그러니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끌고 갈 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몇몇 케이스들이 사실 문제가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몇몇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검사들이 그런 사건들을 자의적으로 골라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한이 집중된 것이고 검찰이 전횡할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실무가 크게 망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막자는 것은 그렇게 몇몇 케이스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아까 김용민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쿠팡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겨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자의적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관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막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사가 집중된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걷어 내고 기소권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있게 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개입하고 영장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혹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할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수사관이나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 양자가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세 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마무리발언으로 나는 꼭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1분 내외로……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회를 드릴 테니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뒤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1분 내외로 마무리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지금.

체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저는 백해룡 경정께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추가질의?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백해룡 경정께서는 지금 손을 안 드셨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무리발언 겸 서영교 위원님 짧게 이따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지요?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분들 마무리발언하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발언 겸 짧은 질의, 질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건욱 검사님, 2022년 5월 13일 자 관봉권 떠지 이게 작년 12월 달에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증인 박건욱 예.

○소위원장 김용민 이걸 발견하고 2018년 사건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증인 박건욱 압수한 날은 저는 금액만 보고를 받았고요. 나중에 JTBC 보도하면서 폐기된 걸 알면서 관봉 사진을 봤는데 관봉 사진의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에서 라벨지를 만든 건데 한국은행에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관봉에 있는 라벨지 정보로는 자금 추적은 안 된다.

○소위원장 김용민 자금 추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 질의의 요지는 2018년 사건으로 받

은 돈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 2022년 5월 13일이니. 그러면 이 관봉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를 했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취한 조치가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증인 박건욱 취한 조치라는 게 추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좀 설명드릴 게 뭐나 하면……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지금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를 질문드린 겁니다. 조치가 특별히 없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은행에 확인하신 정도……

○증인 박건욱 4월 달에 발견하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인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증인 박건욱 예?

○소위원장 김용민 인지하지 않았어요, 별도의 사건으로?

○증인 박건욱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 정도로 하면 되고.

혹시 이희동 차장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인 이희동 저는 나중에 알았긴 하지만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인데 저희가 통상 수사를 해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돼야지 인지가 되기 때문에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참 너그러우셨네요. 놀물을 주고받거나 어쨌든 간 김건희에게 목걸이 주고 했던 사람 집에서 혹은 은신처에서 관봉권 띠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돈이 나왔네 그리고 돈 많네’ 이러고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인지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이상하다고 보고 있고……

○증인 이희동 위원장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소위원장 김용민 나중에 마무리발언 시간 드릴 때 종합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립니다.

그리고 조경식 증인, 오늘 진짜 어려운 자리 하셨고요. 마침 또 추상과 같은 검사와 수사관님 옆에 앉으셔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진술·증언 잘해 주신 것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김해시장 사건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자가 횡령 금액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다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불다 보니 횡령 금액도 줄어들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미리 짜 놓은 판에서 진술을 맞춰 가는 이걸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조경식 제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아까 김해시장 사건 혹시 잘 기억 안 나세요?

○증인 조경식 예, 남의 사건이라……

○소위원장 김용민 앞에 잘 못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엄청난 회유·압박을 통해서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게 결론이 맞습니까?

○증인 조경식 저희 쌍방울그룹 측에서는 맞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과 황문규 교수님은 마무리발언해 주실 때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하냐, 경찰이 수사하냐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해서 누군가를 봐주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경제 장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적어도 사건조작죄나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발언을 하는데 김정민 증인과 남경민 증인, 두 분은 오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위증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도 사퇴하기 전에 발언해서 위증 빠진 거예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소위원장 김용민 맞아요.

이희동 증인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증인 이희동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폐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할 의사는 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민들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보한 자료는 수사관들의 내밀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최재현 검사가 관봉권 폐기 사실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을 만약에 수사관들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질책하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관이 ‘남들 다 폐기해 냐들아’ 이것도 수사관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진짜 기억 안 나거든 냐들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팀이 그것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사팀에서 김건희 씨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는 샤텔백 2개 그것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봉권 폐기와 비교하면 관봉권은 라벨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비해서는 한 1000배의 용기가 필요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열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은 참고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보를 열심히 하셔서 최종적

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웅 의원 사건을 불기소했는데 김웅 의원은 손준성 사건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혐의 없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조성은 참고인도 나중에 마무리발언하시겠다고 손 드신 거지요?

○**참고인 조성은** 예.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건욱 검사님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증인 박건욱** 일단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수사에 대해서 봄주기 내지는 증거인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코인 사건 수사하다가 건진법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은폐하지 않고 건진법사 수사를 했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 계엄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봉이 발견됐을 때 건진법사 주거지에서 관봉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휴대폰도 같이 압수를 했고요. 그 휴대폰에서 김건희 여자 선물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걸 전혀 은폐하지 않고 바로 인지해서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관봉이 폐기된 것을 알고도 저희들은 그때 바로 직후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봄주기 하거나 증거인멸할 생각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최초에 했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압수영장을 45회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장소만 130여 곳이 됩니다. 그리고 특검에 인계하기 직전까지 저희들 계속 압수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 은폐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조사할 때마다 다 영상녹화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나온 걸 저희들이 숨겼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모든 걸 영상녹화 조사했고 본인이 극구 부인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다 영상녹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만약 저희들이 증거인멸을 했다면 폐기 경위 그 내용을 상세히 만들어서 특검에다 그것을 인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수사보고를 다 달아서 기록에 넣어서 특검에다가 그 모든 걸 다 알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남경민 증인 진술하실 차례인데 그 전에 네 분의 증인, 이희동·박건욱·김정민·남경민 네 분의 증인에게 공통으로 묻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으십니까?

○**증인 이희동**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휴대폰 교체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없으시지요?

○서영교 위원 손 드세요, 빨리.

○증인 김정민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이 없어서 공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압수수색 이후에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

이상하게 우리 법사위에 특이한 관행이 있는데 여기서 증언하고 가시면 휴대폰을 교체하시더라고요. 휴대폰 교체하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시더라도 가능한 교체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체하신다면 적어도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공기계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권고,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남경민 수사관 마무리발언하십시오.

○증인 남경민 저는 관봉권의 수리나 폐기와 무관하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 감찰3과에서 저를 불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 조사하지 않으신 채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5만 원권 3300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목록을 압수계에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고.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검찰, 대검의 수사받는 게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혹시 대검에 수사권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남경민 몰랐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범죄·경제범죄만 수사권이 있어요. 이게 부패범죄입니까, 경제범죄입니까?

○증인 남경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사권 없지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없는 수사권으로 수사받으시니까 억울하시지요?

○증인 남경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증인 남경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정민 수사관 마무리발언하십시오.

○증인 김정민 검사실과 저희 압수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도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 저희를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

시를 했다고 저쪽에서는 주장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 하신 겁니까?

○증인 김정민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조경식 증인 마무리발언하십시오.

○증인 조경식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님이 귀국할 때 자진귀국이 아닌 강제귀국입니다. 원숭이들 이십 마리한테 골프장에서 불잡혀 가지고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첫 기자들하고 인터뷰 일성이 다 모르는 사람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들어와서 구속되면서 그게 계속 지켜지다가, 진짜 모르니까요. 모르는 일이고 대북에 대한 저희 그룹 사업이지 유명 정치인들을 끼워 넣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에 의해서, 사기꾼들보다 더 못한 그런 치졸한 수사 기법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가족들까지 저거 하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특히 이화영 부지사님을 엮어 넣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남자로서 지금 도망가 있는 배상윤 KH 회장님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점을 너무 속상해하니까 좀 살펴 주시고 검찰이 이래선 안 된다는,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을 없애겠다는 그 자체가 진짜 너무 박수 치고 저희들 좋아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문규 교수님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참고인 황문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 왜곡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독일에 법 왜곡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 왜곡죄를 적용하는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립니다.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로서 이런 법 왜곡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위하 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은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렇게 주장 합니까? 30년 전에는 검찰개혁 하자고 주장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맥락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 왜곡죄를 지금 이 시기에 도입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필성 이론적인 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각도로 사실은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왜곡죄 관련해서 사실 아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담당하시는 사무국분들이, 사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관련해서 검찰하고 규정 갖고 싸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찾아보는 게 벼룩이어서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계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걸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고요, 이게 환가대금 수리할 때의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이건 환가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법 왜곡이라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기 지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 국민들은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사실 직무 관련된 여러 범죄들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그것이 타당할지 그다음에 구체화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법 해석의 권위자야, 나는 준사법기관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기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1분 이내로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정재기 정재기 참고인입니다.

오늘 10시간 맞나요? 한 8시간 가까이 제가 논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과 왜곡을 이유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논의가 8시간 가까이 아무런 반대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게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부 검사의 일탈을 이유로 헌법이 검찰에게 맡긴 인권보호의 사명을 허무는 것은 중대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이 들어간 제 사건들은 처리 기간 1년이 지나도 어디에 짱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법사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고소 사건 중 일부 사건의 비율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고소 사건 외에 고발·신고·진정 이런 사건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그것은 검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민들의 사건은 지금 현재 각종 경찰서 캐비닛에 짱박혀 있습니다. 과연 이 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8도11999 사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법제도에 80년간 있었던 논의였고.

아까 30년 전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30년 전, 아니 40년 전에도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논의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 이런 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오늘처럼 검찰을 폐지해서 또 다른 정치적 수사 조직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검찰 조직을 대체하는 정치적 조직을 만든다는 논의는 30년,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논의였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법 제4조를 보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할 수 있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지금처럼 여대 야소 상황일 경우에는 국회 4명, 대통령 4명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 3명, 모두 여당 편향으로 구성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민주권주의를 위한 수사절차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민적 선택을 받은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유명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지금 없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절차가 2021년 형소법 개정 이후로 들어왔는데요. 이의신청절차 때문에 사실 서민들의 소송비용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더 많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정치적 문제점 그리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까 2013년도에 있었던 유우성 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유우성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은 검사의 수사통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때 있었던 유우성의 증거조작은 검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이 주도해서 했던 것이고 파견된 검사 한두 명 정도가 그 사건에 관여돼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통제를 못 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당시 검사가 없었다면 국정원은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였는데 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다 폐지한다고 하면 2013년도에 있었던 증거조작 사건이 경찰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이 무력을 가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에게 그 역할을 두었는데 검사가, 검찰이 폐지된다면 앞으로……

○서영교 위원 너무 길어요.

○참고인 정재기 1960년에 있었던 김주열 사건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박종철 사건 모두 다 경찰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논의에서 법치주의 붕괴에 대해서 공범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에 대해서 투쟁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중단하시고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는 남아요. 검사들이 일해요. 걱정 마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정재기 변호사님, 진짜 장시간 말씀을 안 하시고 기다리셔서 1분 내외로 마무리발언을 해 달라는 시간을 훌쩍 넘었어도 따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광규택 위원님이 추천해서 오신 참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할 말씀 해 주신 거 저희가 잘 참고는 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만 하나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우성 사건을 검사가 오히려 수사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라고 하는데 유우성 사건은 검사가 사건 조작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깊이 관여했고 이 부분은 법무부 검찰과 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검사는 공범이다라고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경 출입국 기록을 조작할 때 있어서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국정원 직원에게 ‘5000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폭로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을 때 검사가 더 나쁜데 왜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우리만 기소하느냐고 항의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

들어가십시오. 발언 기회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만 제가 바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김광민 변호사님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누가 손을 더 드셨던 것 같은데, 허재현 기자님 아까 손 안 드셨는데 지금 드시는 거지요?

○참고인 허재현 예.

○소위원장 김용민 추가하겠습니다.

○참고인 허재현 감사합니다.

○참고인 김광민 우선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오늘 조경식 부회장이 상당히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신 곳에서 상당히 많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공익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 북한에 송금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리니까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2년 말경부터 권성동 의원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황 모 씨가 고문으로 있었던 법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조경식 부회장을 접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성태 송환을 논의한 사건입니다. 그러던 중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한다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및 쌍방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원 17명, 쌍방울그룹의 임원 대부분을 구속시켜서 압박을 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이화영과 이재명이 결합된 권력형 비리라는 진술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 과정 전반에 참여를 했었던 쌍방울그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KH그룹의 부회장 출신인 조경식 증인이 폭로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대북송금 사건을 이삼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말 ‘조폭’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 중에 1명을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서영교 위원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참고인 김광민 사실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등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가 다 개입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고두성 검사입니다. 그런데 고두성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고두성 검사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변호인에 대한 사찰은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전체가 다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조작으로 이루어진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의 진실을 밝

히려고 하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다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까지 사찰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을 다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셨고 의미 있는 사건도 하셔서 김광민 변호사님이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변론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것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최소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 행위는 거의 악마와 같은 행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창민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취지에 맞춰서 제가 약 1분간만 한국 검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 좀 가까이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이창민 예.

비교법적으로 간단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6개국, 7개국, 우리가 닮고 싶은 선진 국가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독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대륙법계 독일법을 계소했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 검사들은 수사권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조직이 없고 검찰 수사관이 없어서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영국·미국 다 연방제 국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검찰, 연방검찰 등이 따로, 검찰권이 분점·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한국 검찰처럼,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형집행권 등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기소권만 해도 엄청난 권한인데 이런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례로 들었던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나라로 조만간 오히려 기소 통제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치경찰제를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자치경찰제도 논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자치는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도 좀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검찰은 너무 많은 권한을 무소불위적으로 독점하기 때문에, 권한이 많기 때문에 권한의 분점 내지 분산이 꼭 필요한 시점 그리고 그 논의가 꼭 무르익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허재현 기자님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참고인 허재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겨레 재직 시절부터 그리고 현재 독립매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자로서, 검찰의 이른바 특수부 사건을 10년 동안 추적해 왔던 기자로서 검찰개혁

이 왜 필요한지, 검찰수사권 반드시 없애야 하는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제 취재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데 늘 별건 수사를 무기로 관계인들, 자신이 죽이고 싶은 정치인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죽이는 목적으로 특히 그들의 관계인들 중에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관계인들을 상대로 증언을 회유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해 왔다고 저는 취재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우성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한명숙 사건 그리고 염희준 씨가 담당했던 여러 사건들, 그것이 이재명·이화영을 죽이기 위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이어졌고 지금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검찰의 중요 간부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검찰 수사권은 당장 없애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북송금 조작 사건은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지 않으면 검찰은 다음 대선후보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그러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이 너무 커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중요 간부들 그리고 그 밑의 후배 검사들, 이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 퇴직한 뒤에나 고려해 봐서 그때서야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우리 사회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새로 도입하는 모든 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새 검찰, 수사권 조정법 도입할 때 다 부작용을 거치면서 다시 법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권은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퇴직한 뒤에, 저는 최소한 20년은 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서야 다시 한번 경찰 조직이 너무 커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때 가서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검찰 조직은 바꿔야 되고 수사권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검찰이 검은 음모로 다시 한번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하려는 그런 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은 대표이사님.

○참고인 조성은 제가 고발사주 공익 신고자로 첫 그런 신분을 가지고 4년 만에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봤던 고발사주 사건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검사들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2020년 총선부터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

권을 도구로 활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제압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은 감히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사라는 조롱을 받고도 당당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제가 오늘 앞에서 부득이하게 저격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희동 검사는 사실 그중에서 말단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표 내고 나가셨던 수많은 검사장들, 수많은 대검 간부들이 그 모든 개입에 관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공소청과 어떤 수사보완권 혹은 보완수사권 혹은 수사권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검사, 검사 스스로가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수사되지 않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 공소청이 만들어진 그 검사가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기득권화돼서 스스로가 정치검사, 정치공소청이 되는 것을, 어떤 반성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한 그런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가 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책을 썼던 제목이 ‘정치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단어가, 스스로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함부로 글을 쓸 수 없게끔 법사위 차원에서도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친윤 검사’라고 했지만 저는 방송에서 주로 ‘친윤 범죄 검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그 권한과 스스로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결국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윤 범죄 검사’라고 제가 지칭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승진과 영전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에서도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검찰개혁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해룡 화곡지구대장 나오셔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답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간략하게 질답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백해룡 경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중인 여러분들과 참고인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의 검사도 좋은 검사들 많이 있지요?

○참고인 백해룡 물론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좋은 검사분들,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 가면서 또 필요한 건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경찰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 가면서 새롭게 조작

하고 은폐하면서 아까 조성은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해룡 경장님이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상 줘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지요?

○참고인 백해룡 이게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의 수사 초기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이 합세해서 저를 팝박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도 있지만 저도 고발사주당해서 모해·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자리로, 수사 초기단계의 그 자리로 돌려 달라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 수사야말로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마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세관과 연루되어 있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세관의 검색대도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백해룡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요. 3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 버렸지요.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말레이시아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남아 있었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열린공감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kg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000k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마약의 여파가 한 달, 두 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해가 알려질 때는 1~2년 정도는 걸립니다.

○서영교 위원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참고인 백해룡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서영교 위원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참고인 백해룡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백해룡 수사팀이 수사하기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요.

백해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 도마 수사까지 겹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가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지요.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 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 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심우정이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은 두 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해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 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영교 위원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 될 수 있지요?

○참고인 백해룡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지요. 그것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서영교 위원 100%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그때 세관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그래도 전자통관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 줍니다, 검사하라고.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 백해룡 그리고 마약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세관 직원들하고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삼교대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 버렸지요.

○서영교 위원 마약견도 빼고……

○참고인 백해룡 공항을 열어 줬다고 제가 말씀을……

○**서영교 위원** 공항을 열어 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것을 열어 주고 마약견을 빼 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 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 준 겁니까? 그 뒤를 봐 주는 작자들이 당시의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 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참고인 백해룡**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러면 검찰을 떠올리는데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지요. 국정원이 열어 준 겁니다, 공항을.

○**서영교 위원** 마무리 말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참고인 백해룡**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지요.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마약 사건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지하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웁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인 5000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자금으로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 수만 확보했다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희동 검사님, 혹시 차명 폰 쓰십니까?

○**증인 이희동** 안 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확실하시지요?

○**증인 이희동** 예.

○**소위원장 김용민** 박건욱 검사님, 차명 폰 쓰십니까?

○**증인 박건욱** 안 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확실하시지요?

제가 김학의 사건에서 보니까 검사분들이 차명 폰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휴대폰 교체하지 마시고 차명 폰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참고인 명단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사유	비고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추가

○출석 위원(10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출석 증인

이희동(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김정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남경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박건욱(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조경식

○출석 참고인

김광민(변호사)

김진형(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백해룡(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양승봉(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이창민(변호사)

정재기(변호사)

조성은(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

허재현(기자)

횡문규(교수)